

## 공지사항

### 1 위원회 관련 법규 제·개정

#### 【1】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67호, 개정 2012. 9. 6.)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상담센터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리 부서에서 직접 접수한 민원은 처리 부서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미비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민원서류의 접수) ① 본 규정에 의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한다.

1. 확인, 제 증명의 신청 등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
2. 정보공개 청구 등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 등 별도의 위원회 규칙 또는 훈령·예규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사무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인트라넷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처리부서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민원사무심사관)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인권상담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을 민원사무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고 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민원사무 편람의 작성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편람의 작성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에 관한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	개 정
<p><b>제5조</b>(민원서류의 접수) ①본 규정에 의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b>제5조</b>(민원서류의 접수) ① 본 규정에 의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u>원칙적으로</u>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확인, 제 증명의 신청 등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u></li> <li>2. <u>정보공개 청구 등 다른 법령에 따르거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배움터사용허가 신청 등 별도의 위원회 규칙 또는 훈령·예규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사무</u></li> </ol>

<p>② ~ ③ (생략)</p> <p>④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u>인권상담센터에</u> 통보하여 <u>민원사무처리부에</u> 기록하게 한 후 <u>당해 처리부서에서</u>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u>인트라넷 민원사무처리부에</u> 기록하고 <u>해당 처리부서에서</u>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b>제13조(민원사무심사관)</b> ①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제23조에 따라 <u>인권상담센터장(각 인권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소장)을</u> <u>민원사무심사관</u>(이하 “<u>심사관</u>”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p> <p>② <u>심사관은</u> <u>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u> 수시로 점검하여 <u>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u> <u>지체없이</u> <u>관계공무원에게</u> <u>독촉장을 발부하고</u> <u>민원사무처리에 명백히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u> <u>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u></p> <p><b>제14조(민원사무 편람의 작성 등)</b>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제7조의 규정에 의한 <u>민원사무편람의 작성과</u>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u>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에 관한 사항은</u> <u>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u></p>
--	--

**【2】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운영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50호, 개정 2012. 8. 28.)

**◇ 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시행되어 온 사이버인권교육 과정의 운영 방식을 규정화함으로써, 그 운영 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모든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인권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사이버인권교육과정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인권교육'이란 온라인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코스웨어'라 함은 사이버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육용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이버인권교육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조(과정 및 과목) ① 사이버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일반과정'과 직무관련 인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과정',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설하는 '특별과정', 집합교육과정과 연계된 '혼합과정',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열린과정' 등으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 ② 각 과정별 개설과목, 수강자격, 학습일정, 평가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 전에 공지한다.

제5조(교육인원) 각 과목별 교육생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 제2장 수강 신청 및 취소

제6조(수강신청) ① 사이버인권교육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누구나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 학습의 충실도를 위하여 수강신청자 한 사람이 동일기간 내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승인 및 취소) ① 교육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1. 개설된 과목의 수강생이 20명 미만인 경우

2. 수강신청자가 신청 가능한 과목의 수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한 경우

② 학습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학습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과정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수강 취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3장 학습관리

제8조(학습자의 의무) ① 학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율적·적극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학습·과제·평가 등의 수행을 대신하게 한 경우 해당 학습자의 수강 및 이수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학습방법) ① 학습은 온라인 환경을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단, 혼합과정인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외 집합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② 학습은 순차적인 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립적인 학습내용인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다.

③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은 공직자·교원과 그 밖의 일반시민 학습자 등 수강 대상별로 이수 기준, 교육 인정 방법 등 과정 운영 기준을 각각 달리하여 운영하며, 학습자는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는 대상별 교육센터 사이트를 확인한 후 수강 신청 및 학습을 진행한다.

제10조(학습지원) 담당강사와 운영자는 학습자의 사이버인권교육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학습 진도·과제·평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학습활동이 부진한 경우에는 학습을 독려하여야 한다.

#### 제4장 평가관리

제11조(교육평가) 학습자 교육평가는 학습진도 평가, 과제평가, 시험평가, 학습활동참여도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학습진도 평가'는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량으로 평가한다.
2. '과제평가'는 제시된 과제를 학습 종료 전까지 학습자가 제출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이해도를 평가한다.
3. '시험평가'는 학습 종료 후 진행되는 종합평가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이해도를 평가한다.
4. '학습활동참여도 평가'는 학습과정에서의 질의·의견·토론 등을 토대로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평가한다.

제12조(이수기준) ① 학습자의 각 과정 및 과목평가 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해당 과정 및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단, 직무교육인 경우에는 직무교육평가기준에 따른다.

- ② 각 과정 및 과목평가 총점 구성 비율은 학습진도 평가, 과제평가, 시험평가, 학습활동참여도 평가 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 ③ 각 과정 및 과목별 세부 이수기준은 사이버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결정하며, 교육과정 개설 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

제13조(만족도 평가)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의 학습자 만족도는 교육과정·과목별 학습 종료 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며, 그 조사 결과는 이후 개설되는 사이버인권교육과정에 적절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장 교육시간 및 훈련점수

제14조(교육시간 및 훈련점수 등) ① 각 과목별로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점수(또는 직무연수 학점)는 코스웨어 차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1. 1차시는 교육훈련시간을 1시간으로 한다.
2. 교사 대상 과정인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인증된 직무연수 학점으로 한다.
- ② 각 과목별로 교육시간 및 훈련점수 등에 대한 교육결과는 학습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며, 소속이 없는 일반 시민 대상 과정인 경우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개인 이메일을 통해 통보한다.

제15조(수료증) 각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습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단, 직무교육인 경우 교육통보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교육증명용 수료증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확인증을 수여한다.

제16조(표창) 학습평가 결과 학습 성적이 우수하고, 태도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수료자관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개설하고 운영한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의 수료자의 수료 결과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과정 종료 후 수료자가 수료내용의 증명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별지 1호의 서식을 통한 수료증, 별지 2호의 서식을 통한 수료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장 교육운영 관리

제18조(사이버인권교육 운영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학습자의 학습 지원을 위하여 연도별 과정 운영 개시 전 과정운영일정, 개설과목, 평가방법 및 이수기준 등을 포함한 사이버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그 내용을 공지한다.

제19조(수강료) 사이버인권교육 과정은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무상교육으로 운영한다. 단, 사이버인권교육 과정 운영 시 제공되는 교재가 있을 때에는 교재 신청자에 한하여 이를 제공하며, 이 경우 관련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20조(사이버인권교육운영자문회의 설치)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인권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이버인권교육운영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인권교육의 기본방향
2. 사이버인권교육 코스웨어 개발
3. 연수과정 운영관련 사항
4. 운영규칙 및 기타 주요사항 등

② '사이버인권교육운영자문회의'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사이버교육 또는 인권교육 전문가 3~7명)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은 정책교육국장, 인권교육과장, 행정법무담당관으로 구성한다.
2.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사이버인권교육운영자문회의 위원장은 정책교육국장으로 한다.

제21조(담당강사) ① 학습자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과정 및 과목별 담당강사를 둘 수 있으며, 담당강사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습생 질문에 대한 답변
  2. 필요 시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물, 평가문제, 토론주제, 관련 자료 제공
  3. 법령·제도 개선 등에 따른 담당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 제출
- ② 담당강사는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거나, 해당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 ③ 담당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 학습생의 수, 개설 과정·과목의 수, 과정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22조(과정 또는 과목운영자) ① 학습자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과정 및 과목별 운영자(사이버 튜터)를 둘 수 있으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습진도관리, 평가관리, 이수관리 등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2.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운영
  3. 담당강사와의 교육과정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협의
- ② 과정운영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간, 학습생의 수, 개설 과정·과목의 수, 과정운영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제23조(시스템 및 통신망 관리자) ① 사이버인권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및 통신망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이버인권교육운영시스템 관리 및 점검
  2. 하드웨어시스템(서버) 관리 및 점검
  3. 원활한 사이버인권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통신시스템(네트워크 장비) 관리 및 점검
- ② 사이버인권교육시스템 및 통신망 관리자를 인권교육과에 별도 인원으로 두기 전까지 제2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행정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그 소속의 정보화 담당자가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운영) ① 교사대상 사이버교육의 경우 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원격연수기관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교사대상 사이버인권교육을 다른 원격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 기관 선정은 매년 과정 운영 전까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한다.



제25조(코스웨어 공동활용) ① 인권교육의 활성화와 경제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코스웨어는 중앙·지방 등 각급행정기관 및 교육훈련 기관에 제공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다.

② 코스웨어의 공동활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문서를 통해 공동활용 사용 요청을 하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코스웨어 공동 활용 요청이 있으면 그 활용 목적이 인권교육 보급에 적합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한 코스웨어를 공동 활용하는 기관은 공동 활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저작권보호·코스웨어 활용 실적 통보 등의 책임을 진다. 그 책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동 활용 승인 시 활용기관에 안내하도록 하며, 활용 기관은 공동 활용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일반용)

국가인권위원회 제2000-02-000호

수료증

성명: ○ ○ ○

생년월일: ○○○○. ○○. ○○.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과정’ (2000. ○○. ○○. ~ 2000. ○○. ○○. 교육인정 ○○시간)을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00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별지 제2호 서식(교육증명용)

국가인권위원회 제2000-02-0000호

**수료확인증**

1. 성 명: ○ ○ ○

2. 소 속:

3. 과 정:

4. 교육기간:

(교육시간 ○○시간, 교육평점 ○○점)

인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2** 인사발령

**【1】 사무처 인사**

현부서	직 급 (직 위)	성 명	발령일자	비 고
사무처	행정주사	최은숙	2012. 8. 6.	복직을 명함 사무처 조사국 근무를 명함
조사총괄과	행정사무관	진수명	2012. 8.3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 호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2012년 8월 31일부터)
부산인권사무소	행정주사	김강현	2012. 9. 1.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그 직을 면함
동남지방통계청	행정주사	박춘기	2012. 9. 1.	국가인권위원회 전입을 명함 부산인권사무소 근무를 명함
장애차별조사1과	서기관 (장애차별조사1 과장)	조영호	2012. 9.27.	운영지원과장에 포함
운영지원과	서기관 (운영지원과장)	정혜웅	2012. 9.27.	장애차별조사1과장에 포함
운영지원과	행정주사	류영주	2012.10. 1.	사무처 조사국 근무를 명함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주사보	장옥주	2012.10. 1.	사무처 운영지원과 근무를 명함
조사총괄과	행정주사	안효철	2012.10. 2.	사무처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에 따라 휴직을 명함 (2012년10월 2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주요 동정

7월23일	· 현병철 위원장	제15차 전원위원회 주재
7월26일	· 현병철 위원장	제26차 상임위원회 주재
7월31일	· 현병철 위원장	국회 업무현황 보고
8월 2일	· 현병철 위원장	제27차 상임위원회 주재
8월 9일	· 현병철 위원장	제28차 상임위원회 주재
8월20일	· 현병철 위원장	제29차 상임위원회 주재 국회(운영위)
8월24일	· 현병철 위원장	국회(예결위) 국제NGO면담
8월27일	· 현병철 위원장	국회(예결위) 제16차 전원위원회
8월30일	· 현병철 위원장	제30차 상임위원회
8월31일	· 현병철 위원장	행정심판위원회
9월 3일	· 현병철 위원장	국회(예결위)
9월 6일	· 현병철 위원장	제31차 상임위원회 주재 우즈베키스탄 음부즈만 접견
9월10일	· 현병철 위원장	제17차 전원위원회 주재
9월13일	· 현병철 위원장	제32차 상임위원회 주재

**4**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 현황

(2012. 8.말 현재)

**1. 진정·상담·민원/안내 접수현황**

(단위 : 건)

연도 별	총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면전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	기타	계	면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전화	계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기타	계
계	441,895	10,712	10,895	20,896	13,506	7,602	1,721	65,332	19,208	19,022	201	117,374	15,885	7,907	131,152	21,233	52,244	8,222	220,758
'12. 8.	6,574	48	416	224	189	204	57	1,138	95	174	-	2,190	2,439	117	1,663	301	675	231	2,977

\* 진정의 기타는 인터넷신문고, 대비실, 화상 건수임

\* 안내/민원의 기타는 인터넷신문고, 대비실 등 건수임

**2.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건, %)

월	구분	총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총 누계		65,332	100	49,886	76.4	13,444	20.6	2,002	3.1
2012. 8월		1,138	100	615	54.0	517	45.4	6	0.5

\* 진정접수일 기준임

**3. 상담사례 분류**

(단위 : 건, %)

월	구분	총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총 누계		136,597	100.0	54,884	40.2	14,021	10.3	67,692	49.6
2012. 8월		2,364	100.0	1,025	43.4	198	8.4	1,141	48.3

\* 면전진정 상담건수 제외, 진정접수건수 포함

4.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

월	분류	합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비서실		참여마당 신문고		기타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총누계		81,615	100.0	21,176	25.9	52,200	64.0	434	0.5	7,594	9.3	211	0.3
2012.8월		1,207	100.0	301	24.9	681	56.4	6	0.5	215	17.8	4	0.3

- \* 민원처리일 기준임.
- \* 기타는 전화, 대면, 인편, 면전 건수임
- \* 관리자 삭제 제외 건수임

5. 면진진정 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지역별	전월 이월	신청	종결처리								미처리	평균 소요 일수
			소계	%	상담 종결	%	진정	%	철회	%		
총 누계		39,237	38,908	100	19,208	49.4	10,572	27.2	9,128	23.5	329	16.6일
2012.8월	273	263	207	100	95	45.9	50	24.2	62	30.0	329	20.9일
서울	173	72	42	100	9	21.4	7	16.7	26	61.9	203	42.1일
부산	35	94	69	100	39	56.5	20	29.0	10	14.5	60	15.2일
광주	37	47	46	100	18	39.1	16	34.8	12	26.1	38	15.7일
대구	28	50	50	100	29	58.0	7	14.0	14	28.0	28	15.8일

**5**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12. 7.말 현재]

1. 진정사건 처리 현황(총괄)

(단위 : 건[누적], %)

구분	접수 (A)	종결 (B)	처리 유형															조사 진행 (A-B)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해결	의견 제출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64,194	61,308	24	5	22	2,420	70	91	15	10	1,104	3	1	38,742	1,084	17,260	457	2,886
침해	49,271	47,203	22	5	2	1,465	63	88	15	10	703	3	1	29,737	983	13,744	362	2,068
차별	12,927	12,205	2	-	20	933	7	3	-	-	396	-	-	7,227	91	3,434	92	722
기타	1,996	1,900	-	-	-	22	-	-	-	-	5	-	-	1,778	10	82	3	96

2. 직권조사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누적], %)

구분	조사 결정 (A)	종결 (B)	처리 유형								조사 진행 (A-B)
			수사 의뢰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조사중 종결	각하	기각	
합계	194	184	2	99	12	5	1	53	5	7	10
침해	88	83	1	65	9	3	-	5	-	-	5
차별	106	101	1	34	3	2	1	48	5	7	5



3.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현황

(단위 : 건[누적], %)

구분	접수	종결	처 리 유 형															조사 증	구 성 비 (%)
			수사 의뢰	합의 권고	조 정	권고	고 발	장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간금 구제	합의 종결	기초 조사 해결	의견 제출	각하	이 송	가 라	조사 중지		
합계	49,271	47,203	22	5	2	1,465	63	88	15	10	703	3	1	29,737	983	13,744	362	2,068	100.0
검찰	1,977	1,910	2	-	-	57	1	1	-	3	9	-	1	1,296	38	479	23	67	40
경찰	10,788	10,272	12	-	-	497	8	61	2	5	273	-	-	5,788	158	3,336	132	516	21.8
국정원	193	187	-	-	-	3	-	-	-	-	2	-	-	163	-	18	1	6	0.4
특사경	169	169	-	-	-	11	3	-	-	-	3	-	-	89	2	57	4	-	0.4
지방 자치단체	2,369	2,207	-	-	1	94	-	2	-	-	56	1	-	1,456	15	558	24	162	4.7
사법기관	719	689	-	-	-	9	-	-	-	-	-	-	-	566	4	106	4	30	1.5
입법기관	47	47	-	-	-	5	-	-	-	-	-	-	-	36	2	4	-	-	0.1
기타 국가기관	5,302	5,130	-	3	-	139	-	4	-	1	45	1	-	3,954	28	936	19	172	10.9
구금시설	18,234	17,842	2	1	-	236	1	16	8	-	81	-	-	10,846	675	5,884	92	392	37.8
다수인 보호시설	6,623	6,230	2	-	-	355	49	2	1	-	190	1	-	3,522	45	2,013	50	393	13.2
군	1,011	944	4	1	-	35	1	2	4	1	12	-	-	736	8	136	4	67	2.0
각급학교	672	483	-	-	1	12	-	-	-	-	12	-	-	388	1	66	3	189	1.0
출입국 관리사무 소 등	66	60	-	-	-	1	-	-	-	-	2	-	-	46	-	11	-	6	0.1
공직유관 단체	74	43	-	-	-	-	-	-	-	-	-	-	-	43	-	-	-	31	0.1
기타	1,027	990	-	-	-	11	-	-	-	-	18	-	-	808	7	140	6	37	2.1

4. 차별 진정사건 사유별 처리현황

(단위 : 건[누적], %)

구분	접수	종결	처 리 유 형										조사 중	구성비 (%)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합계	12,927	12,205	2	20	933	7	3	396	7,227	91	3,434	92	722	100.0
성별	469	453	-	-	45	-	-	5	289	3	100	11	16	3.6
종교	123	120	-	-	8	-	-	1	77	-	33	1	3	0.9
장애	5,052	4,713	2	5	336	7	-	167	2,413	26	1,744	13	339	3.9
나이	1,005	952	-	1	113	-	-	19	574	-	241	4	53	7.7
사회적신분	1,322	1,271	-	2	105	-	-	8	809	13	329	5	51	10.2
출신지역	85	84	-	-	2	-	-	1	62	1	18	-	1	0.6
출신국가	237	234	-	-	11	-	-	3	140	6	68	6	3	1.8
출신민족	12	12	-	-	-	-	-	-	12	-	-	-	-	0
용모 신체조건	193	184	-	-	27	-	-	3	115	1	35	3	9	1.4
혼인여부	74	74	-	-	4	-	-	-	55	-	14	1	-	0.5
임신출산	156	145	-	-	12	-	-	10	96	-	25	2	11	1.2
가족상황	98	96	-	1	7	-	-	1	60	-	27	-	2	0.7
인종	53	53	-	-	2	-	-	2	34	1	14	-	-	0.4
피부색	7	7	-	-	1	-	-	-	3	-	3	-	-	0
사상 정치적의견	30	29	-	-	3	-	-	1	18	-	7	-	1	0.2
전과	136	133	-	-	9	-	-	1	95	-	28	-	3	1
성적지향	45	43	-	-	7	-	-	2	20	1	12	1	2	0.3
병력	268	250	-	-	17	-	-	8	168	-	56	1	18	2
학벌/학력	366	348	-	-	23	-	-	5	143	4	169	4	18	2.8
성희롱	1,238	1,170	-	11	121	-	3	153	738	12	102	30	68	9.5
기타	1,958	1,834	-	-	80	-	-	6	1,306	23	409	10	124	15

## 인권침해행위 조사결정

### 1 2012. 6. 20.자 11진정0517300 결정 [폭언 및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요 약〉

##### 【결정사항】

국정원장에게, 피진정인 1, 2, 3 및 중앙합동신문센터 직원들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상대의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결정요지】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 2, 3 등이 진정인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위 피진정인들은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참고인들의 증언을 비추어 피진정인 1, 2, 3 중 구체적으로 누가 폭언을 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대화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그 폭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1. 한○○ 2. 하○○ 3. 정○○ 4. 윤○○

##### 【주 문】

1.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진정인 1, 2, 3 및 중앙합동신문센터 직원들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상대의 업무 수행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다.항 및 라.항은 이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2005. 4. 18.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입국하여 살다가 2009. 8. 10. 북한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남에 따라 자수하고 2009. 8. 11. 04:00경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라고 한다)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위 합신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진정인은 합신센터에 입소하기 전부터 감기 증세로 몸이 아파 입소 당일인 2009. 8. 11. 13:00경 공동숙소에서 지도관인 피진정인 1에게 병원진료와 약 복용을 요청하였더니 피진정인 1이 “뭐 이런 게 있냐? 나와 봐”라고 하여 따라 나가 복도에서 다투었는데, 피진정인 1이 “병원에 가 볼 테면 가봐라”라는 말에 정문 쪽으로 20m 정도 걸어가다가 피진정인 1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팔을 비트는 바람에 너무 아파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입으로 물었더니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숙소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 피진정인 2, 3과 함께 팔과 다리 등 온 몸을 2시간 정도 폭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은 위와 같은 실랑이 및 폭행과정에서 “이런 쌍년아 다 있냐.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썽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하였다.

다. 관리자인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5일 동안 독방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의약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위 진정요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장

1) 독방생활 중 3일간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하였는데, 피진정인 4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8. 12. 16:00경 상담실에서 진정인에게 직원관리를 잘못했다며 사과하면서 “밖에 있는 강○○씨의 아이를 데려오면 잘해주겠다”, “하나원에 특별히 보내주겠다.”, “가해자들에게 조치가 있을 것이다. 북에 있는 가족들도 원하면 데려 올 수 있다.”라고 회유한 적이 있고, 또한 하나원 퇴소 이후, 진정인이 2011. 4월경 폭행피해 후유증으로 팔과 다리가 아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니, 소송을 하지 말라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2) 진정인은 2009. 8. 25.부터 8. 30. 사이 21:00경 폭행 후유증으로 인해 호흡이 안 되어 119 구급차가 와서 불상의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다음날 새벽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같은 해 9월경 스트레스성 피부발진으로 ○○ ○○대병원에서 3회 정도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 1) 피진정인 1

진정인이 합선센터에 입소한 다음날인 2009. 8. 11. 오전 감기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기관내 공중보건과의 진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의사의 진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진찰이 끝나고 공동숙소에 돌아온 직후부터 공중보건과의 대해 ‘개 새끼’ 등의 욕설을 해대면서 빨리 약을 달라고 재촉함에 따라 약을 조제중이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였더니 “빨리 그 돌팔이 의사 새끼에게 안내하라”며 숙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진정인이 숙소를 나와 정문방향으로 약 40m를 뛰어가므로, 뒤따라가 제지하고 진정인의 팔꿈치 부위를 잡고 숙소 앞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물어뜯어 심한 상처를 입었다.

진정인은 이 과정에서 주차장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주차장은 숙소와 바로 연결되는 공개된 장소로서 직원들과 탈북자들이 수시로 왕래하고 있어 이곳에서 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2) 피진정인 2

본인은 당시 다른 숙소에서 지도관으로 근무하던 중, 숙소 주출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 우연히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당시 숙소 주출입구 앞에서 진정인이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큰소리로 “왜 약을 안 주느냐, 병원에 가겠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의사 개새끼, 씨팔놈, 그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너(피진정인 1) 지금 당장 돌팔이 개새끼에게 안내 해”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담당지도관인 피진정인 1이 “오후에 약이 나올 것이니 기다려 보자. 내일 진료를 더 가보자”라고 타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진정인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민증도 있기 때문에 여길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정문 쪽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피진정인 1이 뒤따라가 제지하고 주출입구 쪽으로 데리고 오자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손을 입으로 물고 흔들며 피진정인 1이 비명을 지르며 진정인을 밀쳐 팔을 빼어 내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진정인 1과 함께 진정인을 숙소 출입구 안쪽으로 들여보냈을 뿐 진정인의 팔을 꺾는 등의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 3) 피진정인 3

당시 숙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출입구 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 나가 보았을 뿐 직원이 진정인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

### 4) 피진정인 4

피진정인 1에 의해 숙소 입구로 돌아온 진정인은 숙소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30여분 간 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숙소건물 복도로 들여보냈으나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복도에서 계속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려 여타 수용자 보호 및 진정인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1인실에서 지내도록 조치하였다.

합신센터의 1인실은 징벌적 의미의 장소가 아니며 다인실에 비하여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인침대, 화장실 등이 비치되어 있다.

진정인은 1인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식사와 약을 먹지 않고 직원에게 욕을 하며 팩 우유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직원들이 일절 대응하지 않자 며칠 후 스스로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나이도 많은 분들에게 막말과 거친 행동을 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이에 직원이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신문을 마친 뒤 ‘하나원’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고, 진정인이 직원의 조언을 수용함에 따라 원래 숙소로 복귀시켰다.

직원들의 폭행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사과한 일이 없으며 진정인은 폭행 후유증으로 병원에 간 사실도 없다. 다만, 진정인이 피부 발진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희망하여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적이 있을 뿐이다. 또한, 2011. 4월 경 진정인을 만났을 때, 진정인이 팔이 아프다며 피해소송을 하겠다고 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을 하라고 조언을 하였을 뿐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적은 없다.

#### 다. 참고인의 진술

##### 1) 이○○(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

진정인 및 동료 여성탈북자와 함께 합신센터의 같은 숙소에 수용되었는데, 수용된 첫날 밤 진정인이 심한 감기증세로 호흡을 거칠게 하고 기침을 하여 옆 사람의 취침에 방해가 될 정도였고, 2009. 8. 11. 13:00경 병원에 보내달라고 호소하다 지도관에 의해 방 밖으로 불려나갔고 다투는 소리가 들려 동료 탈북자들이 나가보려 하였으나 지도관이 거실 문을 닫아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보거나 듣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독방에 감금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2009. 8. 12. 오전. 진정인을 불러냈던 지도관이 “저런 녀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을 때, 같은 탈북자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며, 이후 같은 해 9. 27. 신문과정을 마치고 하나원에 입소하여 다시 진정인을 만났는데, 이때 진정인으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하나원 생활 시 진정인의 몸에 난 상처를 본 적은 없으나 진정인이 허리를 아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2) 이○○(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

사건당일 진정인이 감기로 아파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자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실랑이 벌이는 것을 봤다. 직원들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그 이후 상황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직원들과 다툼 때에 직원들이 “저런 녀은 돌려보내야한다.”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이후 신문과정을 끝내고 하나원에 수용되어 생활할 때 진정인이 “아픈 게 뭔 죄가 돼서, 병원에 가겠다는데 폭행까지 하고 독방으로 보내느냐.”면서 울분을 토하는 것을 들었고, 오른쪽 종아리의 멍을 본 적이 있으며 후유증으로 진통제를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3) 전○○(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

당시 진정인이 직원들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직원들이 진정인과 말을 할 때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욕을 한 것을 들었다. 독방에서 나온 진정인에게 직원들이 특별히 잘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진정인은 독방에 갔다 온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린 듯하여 "참고 잘 지내라."라고 격려 해준바 있다.

## 4) 전○○(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

본인은 진정인이 독방에서 나온 지 3~4일 후에 입소하여 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진정인이 아파서 약을 달라고 하다가 다툼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고, 진정인은 하나원에 가서도 허리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 5) 김○○(당시 합신센터 의무실, 공중보건의)

본인은 2009. 8월 당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의무실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종합병원의 외과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당시 하루에 평균 환자수가 100명, 많은 때는 200여명에 달하여, 진정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억은 없으나, 2009. 8월 감기증상을 호소하여 입을 벌려보라고 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진료를 거부하면서 무조건 약을 달라고 소란을 피운 여성 진료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정인인 것 같고 진료 후, 진료실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은 진료 이후, 진정인의 타박상 등 외상을 진료한 기억은 전혀 없다.

##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국가정보원의 답변서, 사건현장 약도, 진정인 진료기록, 피진정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및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이○○, 이○○ 등에 대한 진술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합신센터 공중보건의인 참고인 김○○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대학교○○병원이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진단서, ○○소방서의 회신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05. 4. 18. 한국에 입국하여 살던 중, 2009. 8. 10.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동 경찰서를 경유하여 2009. 8. 11. 04:00경 국가정보원 합신센터에 입소하였다가 2009. 9. 27. 심사과정을 마치고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다.



나. 진정인은 위 합신센터 입소 첫날인 2009. 8. 11. 새벽 감기 증세로 앓다가 당일 10:00경 합신센터 내 의무실에서 공중보건의 김○○의 진료를 받았으나 신속한 의약품 지급이 안 되었다는 등의 진료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3:00경 숙소의 담당 지도관인 피진정인 1에게 항의를 하며 위 센터 정문으로 이동하다 피진정인 1의 제지를 받았다.

다. 당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팔꿈치 부위를 붙잡아 숙소의 주출입구로 데리고 오던 중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팔을 입으로 물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밀쳐내고, 피진정인 2, 3 등의 도움을 받아 진정인을 숙소 주출입구 안쪽으로 들여보냈다.

라. 이에 진정인이 거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항의하자, 피진정인 4가 진정인과의 면담을 한 후 진정인을 1인실(집중문 등에 사용하며 침대, 화장실 등의 편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로 입실 조치하여 5일 동안 혼자 생활하도록 하고 이후 다인 거실로 배치하였다.

마. 위와 같은 진정인의 항의와 피진정인 1, 2, 3 등의 제지과정에서, 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 등은 진정인에 대한 폭행을 직접 목격한 바가 전혀 없고, 합신센터를 퇴소하여 하나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진정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폭언 부분에 대해서는 위 피진정인들이 “싸가지 없는 년”, 또는 “저런 년은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바. 진정인에 대한 합신센터내 의무실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기침 등 감기증세, 여드름, 불면증, 흥분 및 발진 등 피부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 기록은 있으나 상해 등 외상에 대한 진료기록은 발견 할 수 없고, 또한 ○○소방소의 사실조회 회신자료에 의하면, 2009. 8월경 진정인과 관련하여 긴급출동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4. 판단

가. 피진정인 1, 2, 3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2009. 8. 11. 당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지급을 요구하던 자신을 피진정인 1, 2, 3이 제지하면서 팔을 꺾는 등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따라 폭행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 1, 2, 3은 진정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둘째,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당시 합신센터 동료수용자인 참고인들은 모두 진정인의 폭행피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합신센터를 퇴소하여 하나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이를 진정인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셋째, 위 참고인 중 ○○○의 경우, 진정인의 종아리 부위에 멍 자국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이를 본 것이 사건발생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관련 폭행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넷째,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합신센터 의무실 및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감기 및 피부과적 질환에 대한 진료기록 외에 상해 등 외상에 대한 진료기록을 발견 할 수 없는 점. 다섯째, 진정인은 2009. 8월 경 폭행후유증으로 치료 차 ○○소방서로 긴급후송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진정인은 진정되기 당시까지 폭행후유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섯째,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사건 직후인 2009. 8. 12. 및 2011. 4월경 폭행사실을 무마하려고 자신을 회유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4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폭행사실을 신빙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1, 2, 3의 진정인에 대한 폭언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피진정인 1, 2, 3 등이 “이런 쌍년이 다 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와서 말쟁이냐? 너 같은 거 죽어나가도 갖다버리면 그만이야”라며 수차례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위 피진정인들은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살펴보면

2009. 8. 11. 당시에 첫째, 당시 동료수용자인 참고인 이○○은 진정인이 직원들과 다룰 때에 직원들이 “저런 년은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둘째, 같은 참고인 전○○은 직원들이 진정인과 말을 할 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셋째, 또한 같은 참고인 이○○은 2009. 8. 12. 오전 조회시간에 진정인을 불러냈던 지도관(피진정인 1)이 “저런 년은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탈북자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증언을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 1, 2, 3 중 구체적으로 누가 폭언을 하였는지는 특정하기 어려우나, 당시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대화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그 폭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 2, 3 등이 진정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진정인에 대한 1인실 수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4가 자신을 독방(1인실)에 5일간 수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피진정인 4는 당시 합선센터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고 임의적으로 퇴소하려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숙소(다인거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여타 탈북자 보호 및 진정인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1인실에서 지내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점, 둘째,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1인실은 집중신문과정 중 보안유지 등을 위한 필수적인 수용시설로써, 침대, 화장실, 책상 등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징벌적 의미의 수용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셋째, 당시 진정인이 감기증세로 기침이 심하여 타인의 숙면 등 생활상의 지장을 주었던 관계로 다인거실의 합동생활 보다는 일시적인 1인실의 수용이 진정인이나 다른 수용자들에게 불이익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인에 대한 의약품 미지급 여부

진정인은 1인실 수용 중 피진정인 4가 의약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을 1인실에 수용하였을 당시 음식물과 의약품을 지급하였으나, 진정인이 단식을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본 건 진정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5.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진정인 1, 2, 3을 비롯한 합신센터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가.항 및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 2 2012. 6. 28.자 12진정0440800 결정 [중증장애인 구급시설 수용 관련 긴급 구제]

### 〈요 약〉

#### 【결정사항】

○○교도소장에게, 피해자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여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

#### 【결정요지】

- [1]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 [2] 진정요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3] 또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및 「헌법」 제10조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

####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 「헌법」 제10조

【진 정 인】 이○○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피권고인】 ○○교도소 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가. 피해자가 수용 전에 복용하던 약의 반입, 물리치료 등의 의료적 처우와 목욕시설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나.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바 적합한 편의가 갖추어진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

##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손발을 사용할 수 없는 선천성 뇌성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인 바 2012. 6. 14.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2012. 6. 19. 16:30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아니어서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었다.

피해자는 현재 수용생활을 감내할 수 없는 건강상태로 이를 방지할 경우 생명 및 신체 상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구제를 원한다.

### 2. 당사자의 주장요지

-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기관 및 관계기관의 주장

#### 1) 강○○ (○○교도소 의료과장)

입소 첫날인 2012. 6. 19. 중증장애인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보고,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교도관 회의를 거쳐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피해자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였으나 결국 불허되었다.

이후, 피해자를 5일 정도 세심히 관찰한 결과 피해자가 중증장애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특별히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교정시설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2) 노○○ (○○교도소 보안과장)

○○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재차 건의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 3) 우○○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형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한 후, 담당 검사가 ○○교도소에서 피해자를 면담하여 수용상태를 확인하였고 의료과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1급으로 두 다리의 보행이 불가능하고, 양손의 떨림 현상이 있어 몸을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등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뿐 현재 다른 병이 있거나 급히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료거실에 수용되어 재소자 2명의 보조를 받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수용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법적 검토결과, 진정인의 상황이 형사소송법 제4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를 상급기관인 ○○지방검찰청에 송부하였다.

## 4) 박○○(○○지방검찰청 검사 )

○○지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의견내용을 검토하였고 규정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위, 현재 ○○소 의료거실에서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현황 등을 참작하여 지청의 담당검사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규에 규정된 형집행정지 절차에 따라 불허 처리하였다.

## 3. 인정사실

진정서의 주장내용, ○○교도소 의료과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피의사건이 2012. 6. 14. 대법원(2011도9879)에서 형이 확정되어 2012. 6. 19.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 ○○교도소 의료과장 강○○는 입소첫날인 2012. 6. 19. ‘피해자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며, 목이나 어깨 요통의 증상과

보행장애 및 양손 사용이 불가능하여 수감생활시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며,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사망의 위험성이 농후한 자로 형의 집행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 며 ○○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다. ○○지방검찰청 ○○지청 우○○ 검사는 담당검사의 '현장확인 및 피해자와 의료과장 등 면담자료' 및 관련 법조를 검토하여 상급기관인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2. 6. 21. 형집행정지 불허 처분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측은 2012. 6. 22. 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재신청을 한 상태이다.

라. 피해자는 현재 보행이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밥을 먹거나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하여 ○○교도소 측은 1일 동료수용자 2명씩을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허리디스크와 골반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용전에 복용하던 한약환을 투여 받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물리치료요구와 목욕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 4. 판단

가. 형집행정지는 신청인의 권리로 보기 어렵고(2011헌마347), ○○지방검찰청이 담당검사의 현장확인과 피해자와의 면담 및 피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 처분한 것이 불합리 하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위의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직접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수용시설의 편의가 적절히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구치소 의료과장의 소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의 요건인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법상 부여된 직권으로 수용여건의 개선에 관해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다. 아울러,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항 제6호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와 적절한 편의 제공을 위해 기왕에 권역별로 갖추어져 있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로의 이송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항에 의하면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UN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14조 제2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헌법」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적극적인 조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사건의 판단에 앞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28.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장명숙

**3** 2012. 7. 30.자 10진정0767600 결정 [불법연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 〈요 약〉

**【결정사항】**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각각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 2, 3, 4, 5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진정인의 여건을 감안하여 수사에 협조한다면 임의동행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임의동행에 앞서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거나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지는 않았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위 피진정인들의 동행요구에 응한 것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고 진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2】** 또한 피진정인 2, 5는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하고도 이에 관한 동의나 허가를 구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진 정 인】** 최○○

**【피 해 자】** 1. 유○○ 2. 신○○

**【피진정인】** 1. 전○○ 2. 이○○ 3. 조○○ 4. 홍○○  
5. 손○○ 6. 고○○

**【주 문】**

1.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5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관련된 직무교육을 각각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중 피진정인 3, 4, 6에 대한 진정부분 및 '라'항은 이를 각 기각한다.

## 【이 유】

### 1. 당사자의 지위

가. 이 사건 관련 연행 및 조사 등이 있었던 2010. 12. 당시, 진정인은 국세청 ○○세무서장 이었고, 피해자 1, 2는 진정인의 처 및 장모이다.

나. 피진정인 1은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형사과장, 피진정인 2는 같은 형사과 강력 2팀장, 피진정인 3, 4, 5, 6은 같은 팀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 2.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 1, 2는 2010. 12. 8. 피진정인들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받았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진정인을 ○○세무서장실에서 ○○경찰서까지 강압적으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2010. 12. 8.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 2, 3, 4, 5, 6은 2010. 12. 8. 진정인과 피해자들에 대하여 02:00경까지 부당하게 심야조사를 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이 2010. 12. 9.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YTN 등 언론에 공표하여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3.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들

1)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10:00경 진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진정인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긴급체포할 것처럼 강압적으로 말하고, 진정인을 둘러싸 경찰 승합차에 태웠으며, 이동과정에서도 화장실을 갈 때마다 따라와 감시하고, 임의동행확인서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마친 익일 02:00경이 되어서야 진정인에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진정인을 강제연행 하였다.

2) 피진정인 1은 2010. 12. 8. 18:00경 조사를 받고 있던 진정인에게 “이 새끼 비겁하게 마누라에게 미뤄, 그런다고 빠져나갈 줄 알아, 반드시 집어넣을 거야.”라고 폭언 및 협박을 하여 인격적 모욕을 주었다.

3) 피진정인 2, 3, 4, 5, 6은 진정인을 2010. 12. 8. 16:30경부터 익일 02:00경까지 조사하고 03:00경 귀가시킬 때까지 심야조사를 하고도 사전안내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 1, 2에 대해서도 사전안내나 동의 없이 2010. 12. 8. 15: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심야조사를 하였다.

4) 피진정인들은 2010. 12. 9. △△△, ○○○ 등에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언론사 기자들이 진정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취재를 하도록 하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 받아야 할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2, 3, 4, 5는 2010. 12. 8. 10:15경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할 수도 있었지만 진정인의 지위나 지병을 감안하여 임의동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얻었으며 진정인이 스스로 부하직원을 시켜 사전에 예약된 기차표를 취소한 후 동행에 응하였고, 이에 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경찰차량에 승차시켜 고속도로로 이동하면서도 진정인이 요구할 때마다 총 6회에 걸쳐 휴게소를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당시 진정인을 강제연행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이 2010. 12. 8. 16:41경부터 ○○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던 중 피진정인 1이 조사실에 들어오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저희 과장님이십니다.”라고 소개를 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이 서로 악수와 목례로 인사를 하였고, 이 때 피진정인 1이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부인도 오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인한테 전부다 다 했다고 그렇게 하셨지만. 하여튼 잘 판단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조사실을 나간 사실은 있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5의 참여하에 진정인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2010. 12. 9. 00:58경 지병인 당뇨 등으로 피곤함을 호소하면서 다시 일정을 잡아주면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여 즉시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출력하여 진정인에게 열람시킨 후 같은 날 02:28경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미리 출력해 놓은 임의동행확인서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24:00를 넘은 것일 뿐 당초 심야조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사전에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이다.

피진정인 3, 4, 6은 2010. 12. 8. 19:10경부터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함에 있어 심야조사를 한 사실이 없다.

4) 당시 위 사건에 대한 ○○○○와 ○○○ 등 언론 보도는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경찰서와 무관하고 이 보도 이후 각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있을 때에도 피진정인들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없고 조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 줄 수 없다. 최초 기사를 작성한 언론을 상대로 확인하라.”라고 단호하게 대처하였으며, 다만 위 보도내용이 일부 조사내용과 전혀 다른 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내부적으로 진상보고를 하였을 뿐 진정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다.

#### 다. 참고인들

##### 1) 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진정인은 2010. 12. 8. 10:00경 ○○세무서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피진정인 2 등 경찰관 4명에 둘러싸여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본인을 부르더니 “오후 3시발 상경 KTX예매표를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05:20분 ○○발 출근 차표를 구해 달라.”고 하고는 경찰관들에 둘러싸여 승합차에 탑승해서 세무서를 출발하였다.

2010. 12. 9. 11:00경 ○○세무서장실에서 진정인이 ○○○○ 기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당시 진정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으니 취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에 진정인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본 사실이 있다.

## 2) 김○○(○○○○ 기자)

당시 기사는 경찰 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최초 관련내용을 취재한 후 쓴 것이다.

##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정서 및 진술서,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서면진술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 2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 참고인 정○○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관련 피의사건 의견서 및 기록목록, 압수수색영장, 임의동행확인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피해자 1, 2에 대한 진술조서 및 조사과정확인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동영상 CD 2매 등의 수사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임의동행 부분

1) 피진정인 2, 3, 4, 5는 국세청 ○○세무서장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에 대한 뇌물수수 등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2010. 12. 8. 07:45경 진정인의 집무실인 ○○세무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한 후 10:15 경 진정인을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하여 조사하기로 하고는, 진정인에게 사안으로 볼 때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진정인의 지위와 지병(당뇨)을 감안하여 임의동행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협조를 요구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응하여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인 정○○에게 예매되었던 당일 상경 KTX 차표를 취소하고 다음날 아침 ○○발 출근 차표를 구해 달라고 한 후 위 피진정인들에 둘러싸여 경찰 승합차에 탑승하였다.

2) 그러나 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위와 같이 임의동행을 요구함에 있어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는 않았다.

## 나. 심야조사 부분

1) 진정인 및 위 피진정인들이 같은 날 15:10경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진정인 2가 피진정인 5를 입회시켜 16:41경부터 진정인을 조사하다가 2010. 12. 9. 00:58경에 이르러 진정인으로부터 피로를 호소하며 조사를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때부터 02:30경까지 진정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을 하게 하고 끝이어 미리 출력해 둔 ‘임의동행동의서’도 제시하여 각 진정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03:00경 진정인을 귀가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2, 5는 이에 관하여 진정인으로부터 사전에 심야조사 동의를 받지 않았고, 소속 기관장 등의 허가도 받지 않았다.

2) 한편, 피해자 1, 2가 2010. 12. 8. 19:10경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하여 출석하자, 피해자 1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3이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 2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4와 6이 같은 날 23:20경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 다. 피의사실 공표 부분

진정인은 2010. 12. 9. 11:00경 △△△ 등의 기자로부터 위 피의사실에 관한 취재를 받았으며, 같은 날 12:07경 ○○뉴스에 “경찰, 지방세무서장 수뢰 의혹 수사”라는 제목으로 보도 되었다. 피진정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었는데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부터 위 보도내용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는 국세청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내부 보고문서를 작성하여 위 홍보담당관실에 제출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진정요지 나.를 부인하고 있고, 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2011. 10. 25.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2011형제00000호)을 받았다. 피진정인 2는 현재 ○○○○경찰서 지능팀장으로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 5는 ○○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에 근무 중이다.

## 5. 판단

### 가. 진정요지 가.항 임의동행의 적법성 여부

1)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2006. 7. 6. 선고 2005도6810)에 의하면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

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법리를 구체화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제1항에는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2, 3, 4, 5가 진정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하여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진정인의 여건을 감안하여 수사에 협조한다면 임의동행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하고, 임의동행에 앞서 진정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거나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퇴거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않았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인이 위 피진정인들의 동행요구에 응한 것은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추인할 수 있고 위 직무규칙 규정을 준수한 진정한 임의동행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이 피진정인 2, 5가 2010. 12. 9. 00:58 경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에야 진정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읽게 하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하여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 나. 진정요지 나.항 폭언여부

피진정인 1이 조사 중 폭언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피진정인 1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진정내용이 사실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다. 진정요지 다.항 심야조사의 적법성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야조사에 관한 기존의 결정에서 “ 「헌법」 제10조는 수



면권과 휴식권을 소위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연유하는 인격권을 그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권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적정한 수면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심야조사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생활 및 생존방식을 거스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밤을 새워 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의 심신에 고통과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다만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2008. 2. 13. 국가인권위원회 06진인2974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정).

2) 또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심야조사금지)에는 심야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의 석방지연, 증거인멸 및 급박한 위해우려, 야간시간 현행범 체포 및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시간 제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심야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심야 조사 동의 및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진정인 2, 5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를 하고도 이에 관한 동의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당초부터 심야조사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서열람 등의 사후처리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이어서 부득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것도 진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그에 따라 조사를 중단했을 당시 이미 심야조사의 기준시각을 넘었던 것으로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진정인 2, 5의 위와 같은 동의나 허가 없는 심야조사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피해자 1, 2에 대한 피진정인 3, 4, 6의 조사는 2010. 12. 8. 23:00~23:20경 무렵 종료되어 심야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1, 2의 심야조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피의사실 공표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당시 진정인에 관한 수사 상황에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내거나 달리 외부에 이를 알린 사실이 없고 관련 기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도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취재자료를 입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 권고 내용

위 피진정인 2, 3, 4, 5의 임의동행 실시과정에서의 미흡한 조치로 인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피진정인 2, 5의 부적법한 심야조사로 인한 수면권 및 휴식권 침해에 대하여, 그 사안의 정도와 그 전후사정에 따른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앞으로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각 소속기관장에게 임의동행과 심야조사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2, 3, 4, 5의 각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다.항 중 피진정인 3, 4, 6에 대한 진정 부분 및 라.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4** 2012. 8. 16.자 12진정0102900 결정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 등]

---

**<요 약>**

---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사건의 언론 공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진정인 및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진정인의 인격에 대한 평가의 훼손을 초래하여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제84조,

**【진 정 인】** 노○○

**【피진정인】** 1. 이○○  
2. 최○○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사건의 언론 공개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는 각하한다.

**【이 유】****1. 진정요지**

가. 2011. 12월경 기자 신분인 지인이 취재과정에 문제가 있어 피진정인들에게 조

사를 받았다. 이때, 진정인도 위 지인의 취재를 도와주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같이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1은 조사과정에서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편파적으로 조사한 것이 부당하다

2)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실명, 직업, 나이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찰서 수사과 직원인 피진정인 1은 진정인과 진정인의 지인인 장○○가 2011. 11. 20. 전후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하였다. 수사는 피해자 및 참고인으로 부터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진정인 등을 조사하였는바 조사과정에 편파수사를 한 바 없다.

2)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 관련 사건을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진정인의 실명, 직업, 나이 등이 기재된 내부 보고서용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비 기자 검거 보고’를 배부하였는데 이는 실수였다.

##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사건 송치목록, 의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1. 12. 23. 진정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조사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는 2012. 2. 2. 진정인 및 건의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있다.

##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특정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부당한 수사를 하였다는 사안은 경찰의 수사권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가 위 인정사실 나.항과 같이 진정인 및 건의 사건 관계자들의 실명 및 주요 혐의가 기재된 내부 보고문서인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이버 기자 검거 보고'를 기자실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사실이 인정 되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 의무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제84조의 수사사건의 언론 공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사건관련 보도자료는 피의자등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익명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진정사건에서는 실명이 기록된 내부보고서가 기자실에 배포되어 진정인의 정보가 제한없이 노출되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실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진정인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겨주고 인격에 대한 평가가 훼손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진정인에게 헌법 10조에 보장된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사사건 언론공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별지

## 관련규정

###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2.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 언론공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채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제84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제83조제2항의 언론공개를 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5** 2012. 8. 16.자 11진정0625000 결정 [폭언 및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요약〉

**【결정사항】**

○○참모총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 1 등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고, 피진정이  
1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1의 언행은 피해자  
를 취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취급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피  
해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대한 위축을 불러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피해자의 헌법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진정인】** 조○○

**【피해자】** 정○○

**【피진정인】** 1. 홍○○      2. 강○○      3. 장○○      4. 정○○  
5. 김○○      6. 신○○

**【주 문】**

- 1. 해군참모총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 2. 진정요지 ‘가’, ‘다’에 대한 진정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피해자는 '○○○○'기자로 2011. 11. 7. 16:00경 ○○해군기지건설반대 단체회원 4명이 ○○○○마을 해군기지사업단 내로 진입하는 것을 동행 취재하고자 뒤따라 들어갔다가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재발방지 등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4는 피해자가 명함을 주며 '○○○○' 기자 신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가로 막고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 1, 2, 3은 경찰에 인계한다면서 피해자를 해군기지공사장 부지 내에서 부당하게 억류하고 피해자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18:07경 경찰에 인계할 때까지 약 2시간 가량 무단으로 억류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 1은 당시 피해자가 기자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가씨 누구야? 어디서 왔어?”라고 반말을 하고, 심지어 “또 들어 왔어! 겁대가리가 없는 아가씨네”라고 조롱하였으며, “아가씨야, 아줌마야, 결혼은 했어?”라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에게 “완장 왜 찼어! 벗어! 또 들어 왔나? 카메라 못 쓰게 해”라고 반말과 고성을 지르면 강압적으로 대하였고, 피진정인 6은 “아줌마 누구야, 북에서 내려왔어! 북에서 내려 온 기자야!” “미친 년, ×× 년, ○같은 년” “저년이 동영상 다 올린 것 아냐! 저년이 삼거리에서 밤에 술 쳐 먹고 소리 지른 년이네”라는 모욕적인 말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및 피해자 피해자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1 홍○○(대령, ○○해군기지사업단 계획통제실장)

본인은 사업부지 내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 피

해자와 피진정인 4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는 수개월 전부터 ○○마을에 거주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부지내에 무단침입한 사례가 있어 평소 안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불법취재를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지하였으며, 몇 개월 동안 ○○마을에 머물러 있길래 결혼여부를 확인하고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질문을 한 것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외 다른 폭언 등 강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

### 2) 피진정인 2 장○○(소령, 민원담당), 피진정인 3 장○○(중사, 공보담당)

본인들은 ○○기지사업단 사무실 근무 중인 2011. 11. 7. 16:00경 공사현장에 무단침입한 남자 4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보니 피진정인 1, 2가 이에 대응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3차례에 걸쳐 무단침입한 사례가 있는 ○○미디어 기자여서 상부지시에 따라 경찰에 인계하기로 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 6이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왔는지 등의 상호 대화를 하였고, 경찰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공사장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경찰이 도착하지 않아 112에 전화하여 경찰에 빨리 와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경찰 도착이 지연되어 계속 독촉하였고, 피진정인 4에게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하도록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인계될 것을 설명해 주었으며, 이 과정은 억류 상황이 아니었다.

### 3) 피진정인 4 정○○(상사, 해군기지사업단 토지보상담당)

본인은 2011. 11. 7. 오후 신원불상 남자 4명과 피해자가 기지 내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진정 외 남자 4명은 너무 빨리 ○○해안가 쪽으로 달려가 제지하지 못하고, 20~30미터 뒤이어 따라오던 피해자를 붙잡고 누구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사업단에 허가를 받았는지, 또한 군 차량과 작업인원을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해도 되는지를 거꾸로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앞서 들어간 사람들을 취재하려고 들어 왔고 정식으로 취재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 취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진 촬영한 것을 삭제해 줄 것

을 요구하고, 경찰이 바로 올 예정이니 전화를 자제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한참 후, 경찰이 도착하여 본인과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무단침입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짜증을 내며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서명거부로 기록 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하였다.

#### 4) 피진정인 5 김○○(상사, 해군○○기지사업단 계획통제실 근무)

당시 피해자가 이전에 경찰에서 나눠 준 보도완장을 차고 있어 “이건 왜 차고 있어요? 경찰청 보도완장 아닌가요?”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이 없었고, 서로 반말과 고성을 지른 적이 없다.

#### 5) 피진정인 6 신○○(원사, 해난구조대 구조작전대대 ○작전대)

본인은 해군○○기지사업단 파견근무 중인 2011. 11. 7. 16:00경 무단침입한 남자 4명을 더 이상 기지에 진입을 못하도록 하다가 경찰관에게 신병을 인계하였고, 이후 16:10경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어요?”라고 질문을 하자 “기자예요”라고 하여 “기자가 왜 해군기지사업단 내에 불법으로 무단침입을 하느냐”라고 했고 피해자는 기지사업자체가 불법이므로 기지 내 출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참 어이없는 기자네”라고 하면서 지나갔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 다. 참고인들

#### 1) 진○○(경사, ○○경찰서 ○○파출소)

본인은 ○○경찰서 ○○파출소 순찰근무 중인 2011. 11. 7. 오후 최초 해군 관계자로부터 무단침입한 성명불상 남자 4명의 신병을 인수하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위 남자 4명의 신병을 넘겨받아 ○○경찰서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를 붙잡아 보호하고 있으니 신병을 인수하라는 신고를 받고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당시 해군 관계자가 피해자를 체포하여 인계한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고, 강력

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자이고 신원이 확실하여 현행범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다.

## 2) 강○○(경위, ○○경찰서 정보계장)

본인은 ○○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7. 16:00경 청년대학생 4명과 피해자가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 해안가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취재기자 연행은 예민한 상황이어서 ○○해군기지사업단 소속 홍보담당인 피진정인 3에게 언론기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자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여 피진정인측이 풀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보니 그때까지도 풀어주지 않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후 ○○파출소 직원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 등 제출자료, 피해자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 진○○에 대한 전화조사보고, 참고인 강태부의 진술서, 해군기지사업단이 제출한 민원처리부, 채증자료, ○○경찰서가 제출한 정보상황일지, 경비상황일지, 통고처분 출동경찰관의 진술서 및 동인이 정식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 진술조서, 주거침입 수사보고서, 112순찰근무일지, 범칙금 발부대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기자로 2011. 11. 7. 16:00경 ○○해군기지건설반대 단체 회원 이○○ 등 4명이 ○○○○마을 해군기지사업단 내로 무단 침입하는 것을 동행 취재하고자 위 기지사업단 관계자의 사전협의 등 승인 없이 뒤따라 들어갔고, 피진정인 4는 2011. 11. 7. 16:10경 위 이○○ 등 4명의 20~30미터 후방에서 중턱에 있는 ○○○ 바위 해안가 쪽으로 진입하던 피해자를 발견, 피해자를 붙잡아 제지하고 경찰에 신병인수를 요청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 3이 2011. 11. 7. 16:50경 순차적으로 합류하여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어서 피진정인 5, 6도 합류하여 잠시 머무른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병인수가 늦어지자 피진정인 2가 재차 경찰에 독촉하여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진○○ 등이 2011. 11. 7. 18:10경 해군기지공사현장 정문 앞에 이동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병을 피진정인 4로부터 넘겨받아 현장에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무단침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귀가시켰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마을에 오래 기간 체류하는 것이 궁극하여 피해자의 결혼여부를 물어 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라. 나머지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 피진정인들이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 4. 판단

#####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현행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에 대한 인신구속은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14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이라 할지라도 현행범인이 범한 범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통상 사법경찰관리 등 법집행공무원이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성의 원칙, 즉 수사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 피진정인들은 사법경찰관을 가진 자들이 아닌 바, 위와 같은 경미사범에 관한 체포요건을 명확히 인지할 신분적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4가 2011. 11. 7. 16:1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피해자를 붙잡아 대기시키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한 행위는 경찰관의 늦은 출동에 기인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불가피한 경우로써 인권침해 행위가 아닌 경우라고 판단된다.

#####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위 인정사실 다와 같은 피진정인 1의 발언은 당시 피해자가 피진정인 1등에게 자신이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고, 피진정이 1도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취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는 개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적인 관계에 있는 개인으로 취급한 것으로, 불필요하게 사생활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인격적 정체성에 대한 위축을 불러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의 부적절한 언행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나머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하여 폭언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주장은, 위 피진정인들이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 '다'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6** 2012. 8. 16.자 11진정0315700 결정 [교통참여교육 대상자의 모자 등 착용 제한]

〈요 약〉

**【결정사항】**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각 경찰서의 교통참여교육 시 참여자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교통참여교육 대상자에게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용모 및 복장을 제한한 행위는 법령 상 근거가 없고, 비례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제1항~제5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제1항~제7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각 경찰서의 교통참여교육 시 참여자의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1. 5. 29. 08:00~12:00까지 ○○경찰서 앞 교차로 사거리에서 진행

되는 '음주운전자 교통참여교육'에 모자를 착용하고 참석하였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피진정인이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모자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당한 행위이다.

나.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복장제한에 대하여 이유를 묻는 진정인에게 "규칙이 그렇다, 기분 나쁘면 받지 말라, 팻말 똑바로 들어라, 줄 제대로 서라"라고 말하면서 군대에서 기합을 주듯이 모욕적인 언동을 하였다.

##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교통참여교육 대상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며 잡담하는 등 불성실하게 임하는 사례가 많고, ○○○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시달한 「교통참여교육(현장참여교육) 강화 지시」 공문에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교육에 참여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본래 교육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선글라스, 모자, 마스크 등의 착용을 제한한 것이다. 진정인에게 교통참여교육의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위대를 연상할 수 있는 모자와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은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그냥 벗기 싫다, 법적 근거가 무엇이나"라고 하며 교통참여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귀가해 버려 불참 처리하였고, 교통참여교육은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그 운전면허정지처분 일수를 감경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참여자들에게 강제한 사실은 없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교육 장소를 이동할 때, 어깨띠 및 피켓 등을 바닥에 끌거나 지팡이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교양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반말을 하거나 "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지방경찰청 교통과)

○○○지방경찰청 교통과에서 2009년경 각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교통참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교통참여교육(현장참여교육) 강화 지시」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는데,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제한의 법적 근거로 법률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경찰청에서 이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다.

2)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운전면허계)

경찰청에서 교통참여교육에 대하여 운영 매뉴얼을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소속 관서에 선글라스, 모자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이나 지시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제한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규정은 없다.

###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경찰청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영지침, 경찰청·도로교통공단 현장참여교육 시범운영(매뉴얼), ○○○지방경찰청 교통참여교육(현장참여교육) 강화 지시, 참고인 진술서, 현장체험교육 신청서 접수대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참여교육이란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 중 희망자에 대해 경찰서 4시간(현장참여교육), 도로교통공단 4시간(이론교육) 등 총 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일수 30일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며, 참여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나. 진정인 등 18명은 2011. 5. 29.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교통참여교육(현장체험교육)에 참여하여, 당일 08:00경 교양을 받은 후,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 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과 어깨띠를 지급받아 경찰서 앞 사거리 대로변으로 이동하였다.

다. 교통참여교육 현장 교육 담당자인 피진정인은 교육 시작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던 일부 참여자들은 이에 따랐으나 모자를 착용하고 있던 진정인은 피진정인에게 모자를 벗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교통참여 교육이므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위대를 연상시킬 수 있어 착용을 금지한다.” 고 답하였으며, 진정인은 모자 벗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귀가하여 결국 ‘불참’ 처리되었다.

마. 「도로교통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경찰청 시행 ‘현장참여교육 시범운영 매뉴얼’, ‘특별교통안전교육 운영지침’ 등에 교육참여자의 복장 등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없다.

바. ○○○지방경찰청이 소속 관내 38개 경찰서에 시달한 공문 ‘「교통참여교육(현장체험교육) 강화 지시」’에 의하면, “특히,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참여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는 본래 교육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임”이라는 내용과, 지시사항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지방경찰청 이외 다른 지방청에서 위 같은 내용의 제한을 지시하거나 실시한 사실이 없다.

#### 4. 판 단

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1) 이 사건 관련 기본권에 대하여

개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 또는 사회적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즉 일반적 자기행동결정권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므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자기행동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2) 교통참여교육의 목적 및 성격

「도로교통법」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3호는 '교통참여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그 예방,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각호)에 대하여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 다.항은 '교통참여교육은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안전 참여활동, 교통단속 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교통참여교육은 과거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의 일종이 아니라,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의 일정 일수를 감경 받도록 하는 임의적·수혜적 제도의 일종으로, 교육을 통하여 장래의 교통법규위반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 3) 교통참여교육 시 복장제한의 법적근거

모자나 선글라스, 마스크에 대한 착용금지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 행위이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경찰청 교통과가 2009. 4. 17. 관할 38개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교통참여교육 시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근거로 교통참여교육 대상자에게 복장을 제한하였을 뿐, 교통참여교육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관련 법령 어디에도 교육 중 복장 등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이러한 용모 및 복장 제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 4) 복장 제한의 목적 및 방법의 적절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형벌이나 처분이 아닌 임의적인 교육의 경우,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본권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그 교육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이어야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진정인은 피교육자들이 선글라스,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참여하게 되면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본래 교육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4.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통참여교육의 목적이 이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하여 다시 반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얼굴을 노출하고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 서있게 함으로써 대상자로 하여금 반성케 한다는 방법 또한 「도로교통법」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목적을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그 예방,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라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비록 교통참여교육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은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교육이지만, 참여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걸 맞는 복장을 갖추도록 유도할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모자착용의 경우, 교통안전 캠페인을 희화화시킬 우려는 상상하기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줄 이유도 없다. 나아가 선글라스의 경우에도 거리 캠페인이라는 사정상 장시간의 자외선 노출을 차단하려는 건강상 요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특히 눈의 상태에 따라 그 착용이 절실한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셋째, 피진정인은 교통참여교육이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 불이익 조치의 감경에 해당하므로 참여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복장제한에 응하고 싶지 않은 교육대상자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청 등이 대상자에게 수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 없이, 필요한 한도를 넘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논리로써,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5) 소결

위와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비롯한 교통참여교육 대상자들에게 모자 착용 등 복장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 없이 과도하게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반말을 하고, 기합 주듯이 모욕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달리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이 항 진정요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아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별지

## 관련 법령

### 1.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3. 안전운전 능력
4.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의 연기(延期)를 받을 수 있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공동 위험행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교통법규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 2.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공동위험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나.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다.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라.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 3.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제2호에 따른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

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

#### 1. 교통질서

#### 2. 교통사고와 그 예방

#### 3. 안전운전의 기초

#### 4. 교통법규와 안전

5.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6.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 교육은 경찰서장이 실시한다.

④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73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73조, 영 제37조·제38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6과 같다.

② 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9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발송 또는 발급할 때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



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은 영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현장체험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경찰서장이 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연기한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연기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16 제2호

다. 교통참여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시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나 목 의 교 통 소 양 교 육 을 받 은 사 람 ( 운 전 면 허 취 소 후 다 시 운 전 면 허 를 받고 자 하 는 사 람 제 외) 중 교 육 받 기 를 원 하 는 사 람	1) 음주운전으로 운 전면허효력 정지처 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 기 전에 있는 사람	4시간  4시간	(1) 음주운전 사례분석 (2) 음주와 자기통제 등  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강의·시청각·토의·영화상영 등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안전 참 여활동, 교통단속 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2) 교통사고 또는 공 동위험행위로 운전 면허효력 정지처분 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있는 사람	4시간  4시간	(1) 교통사고 사례분석 (2) 운전성향 진단 (3) 상황별 위험예측 등  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강의·시청각·토의·검사·영화 상영 등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안전 참 여활동, 교통단속 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3) 1), 2) 외의 사유 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초보운전자 포함)	4시간  4시간	(1) 교통법규 위반심리 사 례분석 (2) 안전운전요령  교통안전 참여활동 등	강의·시청각·토의·영화상영 등  출퇴근시간대의 교통안전 참 여활동, 교통단속 현장체험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

**7** 2012. 8. 16.자 12진정0325300 결정 [경찰의 부당한 가스분사기 사용 및 의료조치 소홀]

〈요 약〉

**【결정사항】**

○○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병을 깨트려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간 진정인의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지만,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에게 위험예방 차원의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경고절차 없이 진정인에게 가스분사기를 바로 발사하였는바, 이는 적법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0조,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33조의2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박○○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경찰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2. 5. 12. 오후 18시경 진정인은 진정 외 사건처리에 대하여 문의할 것이

있어서 ○○경찰서 ○○파출소를 방문하였는데, 진정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 처리 문제로 큰소리로 다투니 파출소 경찰관들이 시끄럽다며 진정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지구대 문을 잠궈 버려, 진정인이 파출소 밖의 쓰레기통에서 주운 ‘박카스’ 병을 깨고 병 윗부분만 남은 것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진정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진정인에게 아무 경고도 없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가스분사기를 맞은 후 진정인이 얼굴과 목이 따가워 얼음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즉시 119를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119는 한참 후에야 도착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주사를 맞은 후에야 겨우 안정을 되찾았는데,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쏜 후 진정인에 대하여 응급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2. 5. 12. 18:00경 술에 취한 진정인이 파출소를 방문하여 “경찰청 감사실에 신고를 하였는데 짧은 순경 모가지를 떼러 왔다. 그 순경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여, 피진정인이 근무일지를 확인해보니 진정인은 폭행사건의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진정인에게는 해당 순경이 14일에 근무하니 그때 오시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1시간에 걸쳐 고성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옷옷을 벗고 파출소 뒤편으로 나갔다. 이어, 파출소 밖에서 병 깨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진정인이 병을 깬 후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 정문으로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원들에게 주취자가 병조각을 들고 들어가니 방어하라고 말을 한 뒤 무기고에서 가스분사기를 꺼내 진정인을 향하여 발사하였다. 진정인은 가스분사기에 맞은 후 자신이 들고 있던 병조각을 은폐할 목적으로 파출소 내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워 1시간 30여분에 걸쳐 소란과 행패를 부렸다. 나중에 진정인에

게 왜 병조각을 들고 파출소에 들어왔느냐고 물었더니 자해를 하기 위해 병을 깨서 들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진정인은 직원들의 위협과 진정인의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정당하게 장구를 사용하였다.

다. 참고인의 진술요지

1) 최○○ (○○파출소)

진정사건의 발생일 야간 순찰근무 중이었는데 ○○파출소로 들어오라는 무전을 받고 들어가 보니 119구급대원과 가스분사기를 맞은 진정인이 있어 진정인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다.

2) 이○○ (○○파출소)

진정인이 옷을 벗고 파출소로 들어오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 하였다. 피진정인은 “주취자가 병을 깨고 들어온다”고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알렸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물어보자 진정인은 “자해를 하기 위하여 병을 깨고 들어 왔다”고 하였다.

### 3.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의 진술과 CCTV 녹화자료,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소방서의 구급이송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5. 12. 18: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를 방문하여 자신이 신고한 폭행사건을 담당했던 순경을 만나러 왔다면서 파출소 내의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19:31경 파출소 밖에서 옷을 벗고 쓰레기통에서 찾은 ‘박카스’병을 깨고 남은 병의 윗부분 (‘박카스’병의 병뚜껑 정도의 크기만 남은 부분, 이하 유리조각)을 들고 19:32:25에 파출소로 들어왔다.

나. 당시 파출소에는 진정인을 포함하여 7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었고, 진정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들어와 파출소 민원대 앞에 서자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꺼내들고 다른 경찰관 1명과 함께 진정인 쪽으로 다가가자 진정인은 파출소를 나가 버렸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파출소 문을 닫고 돌

아서려는 순간 진정인이 밖에 벗어 두었던 옷옷을 들고 다시 파출소로 들어 왔다.

다. 19:33:05경 다시 들어온 진정인은 경찰관들이 있는 민원대 쪽이 아닌 입구 쪽의 소파로 가서 옷옷을 입으려고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뒤따라가 경고 없이 진정인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를 발사하였고, 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맞을 당시 손안에는 유리조각이 있었으며, 가스분사기를 맞고 나서 잠시 피로워 하다가 손안의 유리조각을 파출소 내 휴지통에 버렸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의 음주소란행위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라. 가스분사기가 발사되고 나자 파출소 안의 모든 직원들은 진정인을 혼자 남겨두고 모두 밖으로 피하여 나갔고, 19:40경 불상의 경찰관이 들어와 소파에 누워 피로워하는 진정인을 보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소파 앞의 탁자에 두었으며, 19:46경 소파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나뒹구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이 물을 적신 수건을 가져와 진정인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마. 19:48경 이후부터는 피진정인이 종이컵에 물을 떠와 진정인의 얼굴에 물을 계속 부어주었고, 119구급대는 20:23경에 도착하여 20:39경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 4. 판단

가. 피진정인의 가스분사기 사용 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에서는 최루제 및 그 발사 장치를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사용한 가스분사기는 경찰장비 중에서도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29조 제2호에 의한 “분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

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이고, 같은 규칙 제133조 (최루장비의 안전관리) 제2호에 의하면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안전수칙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박카스’병을 깨트려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파출소에 들어갔는데, 진정인이 이와 같이 자신과 타인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통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그 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찰 공무원이므로, 「경찰장비 관리규칙」 상의 안전수칙에 따라 진정인에게 유리조각을 내려놓고 위험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미리 경고를 하고, 피진정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위험한 행동을 중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위협예방을 위하여 경찰장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당시 정황으로 보아 진정인은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민원인 대기석의 소파 쪽으로 가서 옷을 입으려던 중이었으므로, 진정인에게 위협예방 차원의 경고를 하지 못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경고절차 없이 소파 쪽에 있는 진정인에게 다가가서 가스분사기를 바로 발사하였는데, 이는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33조 제2호의 안전수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이 장시간 소란을 피우며 유리병 조각까지 들고 있던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 제압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사전 경고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의 직무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나. 응급조치 여부

피진정인은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10분 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진정인의 얼굴을 닦아주고, 종이컵에 물을 떠와 진정인의 얼굴에 부어주는 등 진정인의 고통을 덜어 주려 하였고, 1시간 뒤에는 119 응급구조대를 요청하여 진정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가스분사기를 발사 한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내용은 사실이 아닌 경우로 판단된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2012. 8. 1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영혜    위원 윤남근

별지

## 관련법령

### 1.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고,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3. 「경찰장비 관리규칙」

제129조(정의)

2.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133조 (최루장비의 안전관리)

#### 2. 분사기

나.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2012. 8. 2.자 12진정0391700 결정 [중학교 배구선수에 대한 이적동의 거부]

〈요약〉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지체 없이 발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7. 9. 7. 07진인898 결정, 2009. 12. 28. 09진인4435 결정, 2010. 8. 23. 10진정0161300 결정

**【참조조문】**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제1,4,11호,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대한배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제1,4,9호, 제17조제4항

**【진정인】** 이○○

**【피해자】** 이△△

**【피진정인】** ○○○○중학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지체 없이 발급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여러 사정상 소속 중학교에서 배구 선수로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타 학교로 전학을 했으나 이후 피진정인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선수생활을 하지 못하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피해자의 동생과 부모가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등 전 가족이 주소를 옮기고 거주지를 바꾼 상태의 전출이 아니므로 일종의 위장전입이다. 실제 이사를 했다면 학교에서도 이적 동의를 발급해 줄 수 있으나 피해자 상황은 불법 위장전입이므로 이적 동의를 발급 할 수 없다. 또한, 만일 피해자에게 이적동의를 발급해 준다면 6명이 출전하는 배구게임에 우리학교 선수는 5명으로 줄게 되어 사실상 팀이 해체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 사실

### 가. 이적동의서 제도 개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르면, “이적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이고, 학교소속 학생 운동선수의 경우 이적동의서 발급 주체는 학교장이 된다. 이적동의서가 없으면 최소 2년간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다(동규정 제17조 제4항).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로서 이 사건 피해자가 등록되어 있는 대한배구협회도 동일한 내용의 선수등록규정을 갖고 있다.

#### 나. 피해자의 피진정인 학교 배구팀 선수 생활 및 전학 과정

피해자는 2012. 3. 개학과 동시 피진정인 학교에 특기생으로 정식 입학한 직후 춘계전국중고연맹 배구대회에는 출전하였으나 2012. 3. 26. 서울 소재 ◇◇◇◇중학교로 전학을 하여 이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거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와 동생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사건의 경우 일관되게 해당 선수의 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해 왔다(2007. 9. 7자 07진인898결정, 2009. 12. 28자 09진인4435결정, 2010. 8. 23자 10진정 0161300결정 등).

### 5. 판단

이 사건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제외한 가족이 진정인이 전학을 간 서울이 아닌, △△에 모두 거주한다는 점을 들면서 위장전입이라고 의심하고 이를 이유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명 ‘위장전입’이라 함은 학생이 전학한 곳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상황 등을 일컫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실제 해당 학교로 전학을 하고 주소지를 옮겨 유학생생활을 하고 있는바 ‘위장전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위장전입 여부와 이적동의서 발급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피진정인이 주관적으로 진정인의 행위가 위장전입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적동의서 발급 거부 사건에 대하여 일관되게 시정권고를 해온 위원회의 기결정과 다른 판단을 할 상황 변화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란주

별지

## 관련규정

### 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체육회에 가맹된 가맹단체의 당해 종목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당해 종목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7조(선수활동 제한) ④ 전 소속 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8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 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당해연도에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자
2.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당해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자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당해 가맹단체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 2. 「대한배구협회 선수등록규정」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대한배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선수활동”이라 함은 선수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회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제17조(선수활동의 제한)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9** 2012. 8. 2.자 12진정0349300 결정 [부당한 강제연행에 의한 인권침해]**<요 약>****【결정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단속차량으로 연행한 행위는 공권력 사용의 기준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서 과도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제46조제1항·제47조·제50조·제51조제1~5항·제56조의4제1항·제81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1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제1~7호·제10조제1~2항·제11조제1~3항, 제12조제1~2항

**【진 정 인】** 네○○

**【피 해 자】** 진정인, ○○(진정인의 아내)

**【피진정인】** 1. ○○출입국관리소장  
2. 김○○(○○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

**【주 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진정인 2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과 단속에 참가한 단속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नेपाल 국적으로 기업투자 사증(D-8)을 가지고 ○○시 ○○공단에서 자동차부품공장(○○○○○○○○○○, 이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진정인 2와 단속반원들은 2012. 5. 18. 16:00경, 진정인이 부인과 함께 공장 옆 건물인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강제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진정인의 아내(○○)를 자기들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조회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진정인이 단속차량으로 연행되면서 “수갑을 왜 채우느냐?”고 항의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관련 문건은 사무실과 차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피진정인 2는 “야이 새끼야, 말 많이 하지 마” 등의 욕설을 했고, 단속차량 안에서 자신의 수첩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내려치려고 했으며 “조용히 하라”고 욕박지르고 수첩을 진정인의 가슴에 던졌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2) 피해자(진정인의 부인 ‘○○’)

2012. 5. 18.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옆에 있는 협력업체인 ‘○○○’에서 진정인인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단속반원이 본인과 남편을 체포하듯이 붙잡았다. 단속반원들은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과 같이 사무실에 가서는 외국인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남편에게 수갑을 채웠다.

단속반원들은 남편과 본인을 단속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단말기로 조회를 하며 “불법,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남편이 “서류가 있다”고 말하자 “말하지 마” 하면서, 수첩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본인이 손으로 수첩을 막고, 남편은 “차에 가서 신분증을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으나, 그 단속반원은 “이 새끼” 등의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수첩을 남편에게 던져 남편의 가슴에 맞았다. 단속차량에 남편은 15분 정도 잡혀 있었고, 본인은 25분 정도 더 있다가 풀려났다.



## 나. 피진정 기관

###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체류자격과 관련한 우리사무소의 실태조사 담당자의 제보 및 요청에 의하여, 2012. 5. 18. 오후 진정인의 사업장 옆 건물인 '○○○'에 단속을 나갔고 단속반장이 '○○○' 사무실에 들러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취업 단속을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으나, 사장은 출타 중 이었다.

당시, '○○○'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진정인에게 피진정인 2는 (이곳 종업원으로 보고)출입국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있지 않았고 신분증이 다른 장소에 있다며 단속반원을 데리고 그 장소로 가서 "사실은 신분증이 차안에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가 단속차량에서 신분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진정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왔고 또한 진정인이 도주를 기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란다원칙과 체포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25조에 의거 수갑을 채우고 단속차량으로 데려왔다. 진정인의 아내인 '○○' 역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신분확인을 위해 또 다른 단속반원이 차량으로 데려왔으나, 도주 가능성이 희박하고 도주해도 쉽게 제압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2가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재차 보여주었고 진정인에게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보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차량에 신분증이 있는데 왜 자신이 굳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써야 하느냐"며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기를 거부하여 피진정인 2가 "여기에서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로 데려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재차 이름과 생년월일을 쓸 것을 종용하자 진정인과 진정인의 아내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신원확인 결과 진정인은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 중에 있었고 진정인의 아내 역시 동반(F-3) 자격 소지자며 체류기간연장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의 아내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단속현장에서 남편과 같이 동거하고 있고 도주할 염려가 없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연행을 하지는 않기로 직원들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 시간동안 진정인의 아내는 단속차량에서 약 15분 정도 대기한 것이다.

잠시 후 참고인인 '○○' 사장 이 모씨가 도착하여 추가적으로 진정인과 이 모씨 사이의 계약 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 이때 이 모씨가 진정인의 말만 듣고 거칠게 항의하여 단속반장이 사정설명을 해주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단속반원이 욕을 하거나 수첩으로 진정인의 가슴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차량에 탑승한 진정인에 대하여 피진정인 2가 신원확인을 위해 잠시 기다리라는 수차례의 말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용하는 '○○' 사장이 거의 도착했다고 소란을 피우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 다. 참고인의 주장

### 1) 이○○('○○○' 대표)

진정인의 공장 옆 건물에서 진정인과 협력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당시 진정인은 단속차량에 그의 아내와 함께 잡혀 있다가 먼저 풀려났고, 본인이 “진정인의 부인은 왜 잡아 갔냐?” 고 묻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아내처럼 F-3 사증으로 가사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답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남편 밥 해 주는 게 잘못이냐?”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부인을 단속차량에서 내려 주었다. 진정인은 차에 10분 정도 있었고 그의 부인은 진정인이 내린 뒤 30분 정도 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속반원들이 철수 할 때,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에게 맞았다고 이야기했고, 본인은 피진정인들에게 “누가 때렸냐?” 고 항의하였고 단속반원들이 “제3자는 빠지라”고 말하며 급히 현장을 떠났다.

### 2) 김○○(참고인, 진정인 사업장의 직원)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였더니, 단속반원이 “불법체류자 단속 나왔다, 조사하면 다 나오며, 불법이 아니면 바로 풀려날 것이다”고 하였다.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기관, 피해자,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의 제출자료, 현장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 2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 10명(단속반장 윤○○)은 2012. 5. 18. 16:00경 ○○시 ○○공단 소재 ‘○○○’를 방문하여 진정인(○○○○○ ○○○○ 운영)과 진정인의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보고 단속활동을 하였다.

2) 이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체류관련 서류가 인근 자신의 사무실(○○○○○○○○○)과 자신의 차량에 있어 즉시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속반원들은 진정인과 함께 인접한 진정인의 사무실로 갔으나, 피진정인 2는 더 이상의 서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워, 진정인의 아내와 함께 단속차량으로 연행하여 신원을 확인하였다.

3) 단속반원들은 진정인의 신원파악과 체류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갑을 해제 후 조사를 마쳤으나, 진정인의 아내는 불법사항이 있는지 직원들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 15분이 더 지체되었다.

4) 진정인은 D-8(기업투자 사증)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연장신청 중이었으며, 관련 서류들은 진정인의 사무실과 단속차량과 약 7미터 떨어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었다.

####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단속차량 안에서의 피진정인들이 욕설을 하고 수첩으로 가슴 등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참고인도 당시 진정인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고 하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단속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그의 아내와 함께 신원 조회를 위해 강제로 단속차량으로 이동시켜 신원을 파악한 후 진정인과 그의 아내를 풀어주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강하게 반발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반원이 1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의적 방법을 통해 진정인 등을 단속차량으로 동행시키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고,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춘 진정인 등이 이를 끝까지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진정인에 대해 수갑을 채워 제압을 할 만한 급박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을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제56조의4는 강제력은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방지, 도주우려 및 직무집행을 거부나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이미 '단속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단속차량으로 끌고 가 신원조회를 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고 권고(2012. 4. 24.)한 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단속차량까지 연행한 행위는 공권력 사용의 기준이 되는 '필요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행위라 할 것이고, 결국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의견으로 피진정인 2의 수갑사용 행위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된바 경고조치가 필요하며, 함께 단속에 참여한 단속반원들의 경우 일정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바 이번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진정인과 그의 아내가 단속차량에 있을 때 단속반원이 욕설을 하고 수첩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곽란주

별지

## 관련규정

###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2.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7. (생략)

8.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1항·제2항,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0조(체류자격의 활동),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4조 (체류자격의 변경허가) 또는 제25조(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위반한 사람

9.~14. (생략)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사

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①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

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1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용의자를 조사할 때 용의자가 용의사실을 부인하거나 용의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용의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의자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주거 또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법무부훈령)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범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외국인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제3자의 주거지, 영업장소에서의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① 단속반원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단속반장이 주거권자 또는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

제11조(용의자 긴급보호)① 단속반원은 외국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 등 제시요구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이 때 용의자의 도주방지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용의자를 긴급보호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이하 “고지문”이라 한다)으로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단속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를 용의자에게 내보이고 그 여백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용의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보호서 기재사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보호서에는 용의자 인적사항,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및 보호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거부 또는 허위진술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원불상” 으로 표시한다.

② 긴급보호서의 기재내용은 사무소 도착 즉시 출입국관리 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보호시간은 현장에서 실제 긴급보호 한 시간으로 한다.

**10** 2012. 9. 3.자 12진정0338800 결정 [불공정한 학교폭력 대처에 의한 인  
권침해]

〈요 약〉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학교 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3조제1~3항·제4조제1~5항,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제1~3호·제16조제1~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2항·제13조제1~4항·제14조제1~8항

**【진 정 인】** 손○○

**【피 해 자】** 손○○(진정인의 자)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주장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학교내 인종차별적 발언의 예방적 차원에서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 3세이며, 피해자 손○○(○○○○초등학교 6학년)의 아버지이다. 피해자는 2012. 5. 9 오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5명으로부터 '짱깨'라는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으면서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함에 있어서 피진정인인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불공정한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권리구제를 원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 나. 피해자

학교에서 본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고 피해자에게도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이전에 상당 기간 인종차별적 놀림을 받아 왔다. 학교가 피해자를 오히려 폭력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 실망스럽다.

### 다. 참고인 손○○(피해자의 쌍둥이 형)

이 사건 폭력 상황 가해 학생들은 참고인에게도 종종 '짱깨새끼'라고 놀렸다. 동생이 폭력 가해자로 취급당하는 것이 매우 분하고 억울하다.

### 라. 피진정인

폭력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최근에 개정된 엄격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였다. 피해자가 다수로부터 폭력 위협에 처하긴 하였으나 큰 위협 상황은 아니었으며 특히 하○○ 학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쫓아가 주먹을 휘둘렀으므로 정당방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쌍방폭행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이 사건 폭력 상황이 인종차별을 함축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 3.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주장, 참고인 진술, 학교 측의 조사기록,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이 사건 폭력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학교는 신속하게 관련자 진술서를 받는 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일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던 하나 폭력 상황이 진행된 대체적인 양태에 대해서는 일치하는바, 이 사건 폭력 상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음이 인정된다(언급되는 학생은 모두 피해자와 6학년 1반 동급생이다).

1) 2012. 5. 9(수) 3교시 후 쉬는 시간인 11:00경 오○○은 피해자에게 ‘너는 하○○을 못 이긴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하○○은 친구들과 카드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는 등 먼저 시비를 걸었다.

2) 피해자는 “만지지 말라”고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아래와 같은 말싸움이 발생하였다.

- 하○○ : “짱깨 돼지새끼야”
- 피해자 : “누구보고 짱깨 돼지새끼래!”
- 하○○ : “너 중국 놈 맞잖아, 이 xx놈아”
- 피해자 : “어, 이 xx놈아”

3) 위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몸싸움이 진행되던 중 하○○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뒤쪽 벽으로 약 5m 정도 밀고 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정도 가격하였고, 계속 목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는 하○○의 입을 주먹으로 2회 정도 가격하여 하○○의 입술이 찢어져 피를 흘렸다.

4) 급우들이 싸움을 말리던 중 오○○은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으며 서○○는 말리던 학생들에게 팔이 잡혀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면서 뛰어 올라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코피를 흘렸다.

## 나. 학교의 후속 조치

1) 2012. 5. 10(목) 학교는 이 사건 폭력 상황이 발생했음을 인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를 하였다. 이후 진정한 면담(2012. 5. 11, 금)과 교사 비상대책회의(2012. 5. 12, 토), 학교폭력전담기구회의(2012. 5. 13, 일)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후, 가해자 4인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2) 2012. 5. 14(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자치위원회에는 이 사건 진정한 피해자, 그리고 관련학생 전원과 보호자들이 직접 진술하였고, 논의 결과 오○○, 하○○ 및 피해자 등 3인에게는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징계, 서○○에게는 1호 서면사과, 4호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및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을 처분할 것을 결정하였다.

3) 제1차 자치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던 피해자의 진단서(코뼈 골절로 인한 3주 진단서)가 제출된 것을 근거로 피진정인 학교는 5. 31. 제2차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피해자의 정당방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여 정회하였고 6. 13에 속개되었다.

4) 제2차 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당방위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으나 모욕감에 의한 맞대응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당초의 징계 처분(1호 서면사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을 '서면사과'로 감면 하였다.

5) 하○○의 경우, 피해자의 코뼈 골절상에 대한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기존 결정과 별도로 출석정지 3일을 추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자치위원회의 권한 문제로 이를 취소하였다. 학교장은 당일 최종 처분 결정을 피해자 포함 해당 학생들에게 통지하였다.

6) 진정한의 요청으로 피진정인 학교의 6. 13 처분에 대한 재심이 7. 5.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최되었으나 기각되었다. 다만, 동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조치가 늦은 점을 사과하고, 전학을 가서도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 4. 판단

가. 이 사건 폭력 상황 및 자치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에서 하○○, 오○○, 서○○가 행사한 폭력과 피해자 손○○이 행사한 폭력은 애초에 하○○이 인종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어 자극하고 먼저 폭력을 행사한 후 나머지 2인의 가해학생이 추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먹으로 2회 정도 하○○의 입을 가격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와 이들 3인의 가해 학생이 가한 폭력 간에는 동기와 양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1차 자치위원회의 결정은 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에게 사실상 동일한 징계 처분을 함으로써 불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

2) 다만, 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 결정 기구라는 점에서 그 결정 사항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애초의 결정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하는 수정 의결을 하였고, 이 결정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의해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학교의 대응 부분

1) 이 사건 폭력 상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정의된 학교폭력 상황에 추가하여 인종차별적 발언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위 법 상 학교폭력에는 인종비하적 모욕의 경우를 별도로 예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치위원회가 인종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진정인의 경우 인종차별적 발언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자치위원회 결정과는 별도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문의 탐구 이외에도 인성교육을 통한 인격의 도야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내에서 발생한 동료 학우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은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 학교의 장에게 전체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를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곽란주    위원 한태식

별지

## 관련 규정

###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2. 「아동복지법」

제3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2012. 9. 3.자 11진정0471500 결정 [교사의 학생 인권침해]**<요 약>****【결정사항】**

○○광역시교육감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해자 본인이 설문이 진행되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에 관한 부정적 정보가 여러 차례 수집되었고,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이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받은 학우들과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4항·제16조의2제1~3항

**【진 정 인】** 전○○

**【피 해 자】** 문○○(진정인의 자)

**【피진정인】** 노○○

**【주 문】**

○○광역시교육감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1. 진정요지**

피해자의 중학교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2010. 9. ~ 2011. 2. 피해자의 같은 학급 학생들에게 3회에 걸쳐 자의적인 설문조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언행, 초등학교

때의 행위 등을 묻고 피해자가 이상한 학생인 것처럼 답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학생의 인성 등을 교육해야 할 교사가 오히려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2. 당사자의 주장요지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해자

2010년 당시, ○○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여름방학 전에 피진정인인 담임 교사가 학급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화가 났다. 또한 학우들이 작성한 설문내용을 피진정인이 다시 쓰라고 하여 재작성된 사실, 같은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학생에게 초등학교 시절의 일을 질문한 사실 등 피진정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다. 피진정인

1)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이 2010. 8. 허위사실(체벌, 인격권 침해 등)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유사한 내용을 ○○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광역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실무근의 과장된 민원내용을 소명하기 위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필요했는데, 마침 진정인이 9. 17. 학교를 방문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 감사실에 진정을 낸 사실을 언급하여, 차제에 학급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피해자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교육청에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2) 2010. 9. 진정인이 본인을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기 제출된 학생들의 설문 진술서가 일시, 장소 등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서 제출용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이때, 설문에 응하기를 희망한 학생들만 이름을 쓰게 한 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3) 2011. 1. 진정인이 본인을 피해자 폭행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하여 본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 2011학년도 학사일정 마지막 날인 2. 24.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기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4) 본인이 학생들에게 실시한 세 차례의 설문조사는 피해자의 평소 언행을 확인한 것이었으며, 단 한 번도 답변자의 이름을 쓰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광역시교육청, 경찰서 등에 허위사실로 진정 및 고소를 한 상황에서 본인은 별도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적도록 강요한 바 없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 사실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주장, ○○광역시교육청 조사결과, 법원 재판기록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6. 8. 당시 ○○ ○○중학교 교사였던 피진정인의 체벌 및 인격권 침해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여 ○○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 조치, 학교장에게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여 각각 수용된 바 있다. 이에, 피진정인은 본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나. 피진정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 ○○중학교 1학년 7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총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1) 1차 설문조사는 2010. 9. 17. 피진정인이 ○○광역시교육청 감사실의 조사를 받던 중 진정인이 제기한 주장을 해명하기 위해 학급 학생들에게 개방형 진술서 형태로 작성하게 하였다.

2) 2차 설문조사는 2010. 9. ○○○경찰서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학생 진술서가 명확해야 한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설문을 하였으며, 피해자인 문○○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을 하였다.

가) 문○○이 초등학교 때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나) (2010년) 3월 문○○의 학교생활 태도는?

다) 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불편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라) (2010년) 4. 6.부터 선생님에게 지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마) 당시 선생님이 처음부터 문○○을 체벌하였나요?

바) 선생님에게 지도 받을 당시 문○○의 태도가 어떠하였고, 결국 회초리를 사용하게 된 원인과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3) 3차 설문조사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추가로 고소하자 이의 해명을 위해 2011. 2. 24. '참고인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작년 4. 13. 선생님이 문○○을 출석부로 몇 십대 심하게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상황을 쓰시오. 원인은 문○○의 어떠한 행위와 태도 때문이었나요?' 라고 설문하였다

다. 설문의 답변내용을 보면 학우들은 피해자의 부정적 내용(욕설, 싸움, 장난, 괴롭힘 등)을 진술하였고, 상당수 학생들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 5. 판단

가. 관련 기본권과 기본권 보호의무

1) 「헌법」 제10조에서 유추되는 인격권이란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을 포함한다.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의 위계질서가 관행적으로 유지된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학생은 학교 내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고 학생의 인격권 또한 침해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침해된 기본권은 교사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학생인 피해자가 오히려 피진정 교사의 소명권 행사를 위해 실시된 자의적인 설문조사 과정에서 원치 않는 당사자가 되어 학우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거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인 피해, 즉 인격권의 문제라 할 것이다.

2) 더불어 국가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한 직접적인 규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아동을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사건에서 피진정 교사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의 문제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그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피진정인의 설문조사에 따른 기본권 침해 유무

1) 피진정인이 3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피진정인의 소명을 위한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급 담임으로서 직접 12세 전후(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동료 학생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가 그 시점과 설문내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차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6개의 질문 구성이 특정 학생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3번 문항의 경우, ‘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불편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에서 특정학생을 지목한 내용으로 기술하여 문구 자체가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쓰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학생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설문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명을 강요한 일이 없으며, 순수하게 자신의 소명을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본인이 설문이 진행되는 줄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에 관한 부정적 정보가 여러 차례 수집되었고,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피해자에게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이 부정적 여론을 유도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학우들과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는 바,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2) 피해학생이 ADHD, 충동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어서 피진정인이 피해학생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기 힘든 나이의 동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었는지' 등을 질문한 것은 교사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이며, 설문조사 사실 및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겪게 될 정신적인 모멸감 등을 고려해 보면 피진정인의 소명권 행사 차원에서 실시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결국, 교사로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3회에 걸쳐 사실상 공개적인 방식으로 학급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같은 법 제16조의2의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은 학생들을 지도·교육하는 교사로서 인권교육의 수강 등을 통하여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관할 교육감을 통한 인권교육의 실시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곽란주    위원 한태식

별지

### 관련규정

####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애학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 제6항을 준용한다.

## 차별행위 조사결정

### 1 2012. 8. 22.자 12진정0315200 결정 [기혼여성 직원의 친정부모에 대한 진료비 할인 배제]

#### 〈요약〉

#####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에게 기혼남성 직원과 달리 진료비 감면대상에 친부모나 친조부모가 아닌 시부모나 시조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진정인】 주○○

【피진정인】 ○○대학교병원 원장

#####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요지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교직원의 가족이 ○○대학교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결혼한 여성 직원의 경우 친정 부모를 할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은 ○○대학교 직원인 진정인의 딸이 결혼한 이후부터는 ○○대

학교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 2. 피진정인 주장 및 관계인 의견

### 가. 피진정인 주장

○○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대학교와 ○○대학교병원과의 상호협약을 근거로 하며 협의를 통하여 기혼여성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2010. 감사원의 10개 국립대학병원 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감면제도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되어 진료비 감면대상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은 상황이어서 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예정이고 따라서 진료비 감면을 추가하기는 어렵다.

### 나. 참고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견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결과 진료비 감면제도의 감면 기준 및 대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국립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진료비 감면대상을 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에서 해당 학교의 반발로 진료비 감면규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2012. 6. 28.에도 감사원 지적사항의 조속한 이행 협조 문서를 해당 국립대학병원에 시행한 바 있다. 기혼여성 직원의 친정부모를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은 병원 직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과 피진정인 및 참고인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과 ○○대학교 총장은 1993. 12. 1. 후생복지사업 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교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대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하고 병원 직원에게는 대학교 교직원 자녀와 동일한 수준에서 학비를 감면하기로 하였는데, 학비 감면의 경우 2008.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폐지되었다. 피진정인은 「진료비감면세칙」에서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미혼자녀 등을 진료비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기혼 여성 직원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시가로 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 병원의 2011.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병원 직원 관련 감면액은 약 1,765,149,000원, 대학교 직원 관련 감면액은 약 152,687,000원이고, 이 가운데 대학교 직원의 부모(시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약 13,975,000원으로 대학교 직원 관련 감면액의 약 9%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감면액은 병원 직원의 경우 약 156,263,000원이나 대학교 직원의 경우 감면액이 없다.

다. 감사원은 2010. 10개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2009. 진료비 감면 총액(197억 원)이 전체 의료부문 적자액(211억 원)에 육박하는 등 과도한 진료비 감면이 국립대학 병원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진료비 감면기준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 기준 및 대상 등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정·시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2010. 국정감사에서도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대상, 진료비 감면기준 표준화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장 회의를 통하여 통일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2. 6. 28. 반복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립대학병원에 송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2011. 8. 1. ○○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제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학교에 통보하였고, ○○대학교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병원 이사회에 교직원 진료비 감면을 삭제하는 안건이 두 차례 상정되었으나(2011. 10. 19. 제100차 임시이사회와 2011. 12. 19. 제101차 정기이사회) 결정이 보류되었다.

## 5.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이용 등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딸이 결혼을 한 이후 진정인을 진료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진정인은 ○○대학교 여성 직원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친정 부모를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부모를 진료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부양을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정되고,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며, 부부가 ○○대학교 직원이라고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대학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학교 여성 직원의 경우 시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로 판단되며 ○○대학교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것이 성차별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조부모를 남성 직원의 친조부모 또는 결혼한 여성 직원의 시조부모로 한정하는 것에도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국립대학병원의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고 ○○대학교 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교병원 이사회에서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안이 2차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보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제도가 언제 폐지될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성차별적 관행의 시정은 대학교 교직원 진료비 감면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에게 기혼남성 직원과 달리 진료비 감면대상에 친부모나 친조부모가 아닌 시부모나 시조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 ○○대학교 기혼여성 직원과 기혼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양현아    위원 김성영

## 2 2012. 7. 18.자 12진정0222500 결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 〈요 약〉

####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금융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3】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결정요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동반자의 신분증 지참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진정인이 청약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피진정보험사 직원이 진정인에게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녹취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진 정 인】 ○ ○ ○

【피진정인】 (주)○○보증보험 대표이사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전맹(全盲) 시각장애인으로 2012. 3. 30. ○○보증보험(이하 '피진정보험사'라 한다.) ○○지점을 방문하여 진정인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고자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했으나 진정인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지점장은 진정인이 서류를 읽을 수가 없어서 보험체결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류를 거것으로 읽어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하였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구한 것과 시각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2. 3. 30. 16:00경 ○○보증보험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점 대리점 설계사 ○○○(이하 '설계사'라 한다.)과 면담하고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발급을 요청하였다. 설계사는 청약과정에서 진정인이 보증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읽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진정인 및 진정인의 활동보조인 ○○○(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였는데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

2) 진정인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을 확인한 후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만 하면 되지,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왜 필요하며 흥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탁자를 내리치는 등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이에 지점 사무실에 있던 지점장 ○○○(이하 ‘지점장’이라 한다.)가 장애인을 배려하고 원만히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 “우리가 거짓으로 서류를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3) 설계사가 2012. 3. 30. 17:30경 진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또한, 지점의 부지점장 ○○○(이하 ‘부지점장’이라 한다.) 및 설계사가 2012. 4. 16. 진정인을 방문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절차였을 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음을 설명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2012. 4. 17.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진정인을 방문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인데, 진정인이 이를 장애인 차별로 여겨 불쾌감을 느낀 부분에 대해 재차 사과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였다.

4) 결과적으로, 당사가 진정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절차상 당사자 간의 오해로 인한 불만사항이 장애인 차별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청하게 된 것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어서 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 제95조의 2(설명 의무 등)에 의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2. 3. 30. 16:00경 활동보조인과 함께 지점을 방문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약하였으나, 설계사는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므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청하였으나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진정인이 진정인 본인의 신분만 확인하면 되지,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왜 필요하나며 항의하자, 지점장이 "우리가 거짓으로 서류를 읽어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말하였다.

나. 2012. 3. 30. 17:30경 설계사가 진정인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다. 진정인이 청약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의 주계약명은 전대차계약(월세 등 지급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진정인이며, 보험가입금액은 3백만원이고, 보험기간은 2012. 4. 9.부터 2014. 4. 8.까지이며, 보증내용은 점포 임차료, 관리비 및 원상회복비용이다.

## 5. 판단

###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보험회사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0호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보험대상자가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나. 피진정인의 거부행위가 진정인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진정인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진정인은 당시 활동보조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진정한이 보증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바, 본 진정의 보험증권 발급 거부의 주된 원인이 진정한의 장애를 사유로 한 것인 이상, 피진정인의 보험가입거부 행위는 장애를 사유로 진정한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진정한이 보험청약서류를 직접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므로 진정한을 동행한 활동보조인에게 청약내용을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며, 아울러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한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의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진정한에 대한 보증보험계약 청약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피진정인이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정한의 보증보험청약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i)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해당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동반자의 신분증 지참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이 원칙이라는 점, ii)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i) 진정한이 보증보험 청약관련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지라도 피진정보험사 직원이 진정한에게 구두로 보험상품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에 대한 근거로 '녹취'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 iv) 현실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직원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청약관련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도 전화상으로 계약 당사자의 신분 확인, 보험상품 및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보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v) 「보험업법」 제95조의2에 의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보험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녹취 또는 서명 등을 받아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활동보조인 신분증을 요구했다는 점, vi) 나아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7호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서류에 서명을 하게 했다는 점, vii) 이에 더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며, 같은 법 제30조에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이 진정인의 가족도 아니며 법정대리인도 아닌 이상 보험계약 체결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없으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요구하고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명을 대리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서 진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재발방지의 필요성

이 건에 있어 피진정보험사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등 계약 지연으로 인해 진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향후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와 유사한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마. 소결

위 인정사실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건대, 계약당사자인 진정인 본인이 이행보

증보험 계약체결을 위해 지점을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험계약 당사자도 아닌 활동보조인의 신분증까지 요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체결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지

## 관련규정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 의무 등)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 3 2012. 7. 18.자 11진정05274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 〈요 약〉

##### 【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에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결정요지】

항공기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기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됨에도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

##### 【참조조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진 정 인】 ○ ○ ○

【피 해 자】 ○ ○ ○

【피진정인】 (주)○○○항공 대표이사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가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 요지

가.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진정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등과 함께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기위해 ○○○항공(이하 '피진정항공'이라 한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방법에 대해 문의하였다. 피진정항공은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까지 버스로 이동한 후 스텝카를 이용해야 하므로 휠체어를 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어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나. 피진정항공이 운행하는 항공기에는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내에 휠체어 고정 장치를 갖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전용좌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와 관련

가) 스텝카를 이용한 항공기 탑승은 국내 각 공항의 탑승교 부족으로 불가피

한 상황이며, ○○항공과 ○○○○항공을 제외한 저비용항공사들은 당사를 포함하여 승객용 리프트카를 구비·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당사는 타 저비용항공사들 처럼 걸을 수 없는 승객이 탑승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제공하고, 직원이 승객의 이동 및 기내 착석까지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객이 원할 경우에는 탑승교를 이용하는 항공편으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명에게는 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나) 각 공항의 지상조업사가 저상버스, 리프트카 등 장애인 탑승편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가 장애인 탑승편의 시설을 직접 구매 후 지상조업사에 인계해 사용해야 하며, 이럴 경우 공항 당 약 2.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 2) 진정요지 '나'와 관련

좌석을 판매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항공사로서는 휠체어 좌석을 이용하는 승객이 없을 경우 영업 손실을 항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 없이 기내 휠체어 좌석을 별도 설치하기가 어려우며, 국내 대형항공사도 휠체어 좌석을 별도 설치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당사는 기내용 휠체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 다. 참고인(국토해양부장관)

### 1) 진정요지 '가'와 관련

가) 대형항공사는 높은 운임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전략에 따라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위해 리프트카를 구비하고 있으나, 저비용항공사는 대형항공사보다 낮은 운임으로 운항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비용을 최소화하는 영업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리프트카 없이 승무원 등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 탑승을 보조하는 대신 본인과 동반자의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다만, ○○○와 ○○○○만 장애인 승객을 위해 지상조업사의 리프트카를 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이 항공기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시설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되어있는 운항승무원들이 장애인의 탑승을 직접 보조할 수 있고, 이것이 장애인들이 받는 서비스 질을 낮출 수는 있으나 장애인

의 이동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 따라서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탑승을 보조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공사의 경영상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승무원의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있고, 장애인들이 리프트카를 이용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는 점과 「이동편의증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저비용항공사도 가급적이면 리프트카 등 승강설비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2) 진정요지 '나'와 관련

항공기에 장착되는 모든 설비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운항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며, 휠체어 고정장치 또한 돌풍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에 설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휠체어의 기내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갖춘 고정장치 설치, 기내 이동에 충분한 공간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국제기준 정비, 항공기 설계·제작비용 상승, 장애인 승객이 없는 경우 빈 좌석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의 기회비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기내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 사실

피진정인 및 참고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현장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진정요지 '가'와 관련

1) 2012. 5.말 현재, 피진정항공, ○○항공, ○○○항공, ○○○, ○○○○등 총 5개의 국내 저비용항공사 중 ○○○ 및 ○○○○을 제외한 3개 항공사는 리프트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행이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스텝카를 이용해 항공

기 탑승 시 보호자 또는 항공사 직원이 장애인을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피진정항공은 탑승교 이용 불가 시 보호자가 없는 보행이 불가능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호자 없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

2) 피진정항공은 장애등급 1~3급의 장애인 본인, 장애등급 1~3급의 동반 보호자 1명, 장애등급 4~6급 장애인 본인에 한해서는 일반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3) ○○항공 및 ○○○○항공은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어 항공사 직원 및 승무원들이 장애인을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태운 후 해당 좌석으로의 이동 및 착석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항공은 기내용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업거나 들어서 기내 좌석 착석을 도와주어야 한다.

#### 나. 진정요지 '나'와 관련

피진정항공을 포함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과 대형항공사인 ○○항공 및 ○○○○항공도 기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을 갖추고 있지 않다.

## 5. 판단

### 가. 판단기준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교통수단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교통사업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 나. 진정요지 ‘가’와 관련

### 1)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구비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i) 항공기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기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 스텝카를 이용해 항공기 탑승 시, 피진정항공 직원들이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장애인을 직접 업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며, 특히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점, iii)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호자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등에 업고 계단으로 올라서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 iv)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등의 장애인을 잘못하여 업었을 경우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착되거나 마비된 팔 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경사가 심하고 폭이 좁은 스텝카의 계단에서 실족하여 굴러 떨어질 경우 보호자 및 장애인 모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진정인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이 비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과 그 동반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다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과 편리 그리고 동등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자의적으로 유보시킬 수 없다는 점과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피진정항공이 인적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에게 항공기 운임을 할인 적용할 지 여부는 민간항공사인 피진정항공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

해하면서까지 피진정항공의 비용절감 정책이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장애인 탑승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리프트카 등의 편의장비를 김포 및 제주공항에 구비하는 경우 공항 한 곳당 약 2.5억원, 총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피진정인은 추산하고 있으나, 2011년 피진정항공의 매출원가가 약 76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설비를 구비하더라도 매출원가 증가율이 1% 미만이라는 점, 그리고 피진정항공이 편의설비를 구입하는 대신 장비를 렌트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비용절감을 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휠체어 탑승설비를 구비하는데 있어서 피진정인에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피진정인의 주장은 휠체어 승강설비 미확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 다. 진정요지 '나'와 관련

항공기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 전용석이 별도로 갖춰지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항공사 직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휠체어에서 기내용 휠체어로 옮겨 탄 후, 기내의 좁은 통로를 따라 좌석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수반된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i) 비행 중 갑작스러운 기류변화 등으로 항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 고정장치가 갖춰진 휠체어석이라도 일반좌석에 착석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는 만큼의 안전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 ii) 참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휠체어의 기내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갖춘 고정장치 설치, 기내 이동에 충분한 공간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안전관련 국제기준 정비, 항공기 설계·제작비용 상승, 장애인 승객이 없는 경우 빈 좌석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의 기회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iii)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외 모든 항공기내에 고정장치를 갖춘 휠체어석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진정인이 기내 휠체어석을 갖추지 못함에 있어서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기내에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라. 휠체어 승강설비의 의무화 필요성

참고인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에 기차, 버스, 선박의 내부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에 반해 항공기에는 법적으로 승무원이 탑승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필요할 경우 승무원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항공기 내부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i) 위 진정요지 ‘가’와 관련한 판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을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장애인이 느낄 수 있는 수치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ii) 항공기 승무원이 대부분 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자 장애인을 업거나 들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 iii) 휠체어 승강설비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의 경우에도 승강장과 열차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심한 역사에는 현실적으로 이동식 경사판을 모두 구비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iv) 휠체어 승강설비가 내부시설로 의무화된 기차나 선박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내부시설로 갖추지 못한 경우, 승강장 또는 부두 등 외부에 이동식 리프트 또는 경사판 등 휠체어 승강설비를 별도 비치하여 해당 교통수단과 연결한 후 장애인에게 탑승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를 항공기 내부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항공기 구조나 기술상의 문제로 어렵다 할지라도, 항공기 외부에 리프트카 등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는 것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 v) 2011년 말 기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국내선 점유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항공여행이 대중화되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선박, 버스 등과 달리 항공기만을 휠체어 승강설비 의무화 대상 교통수단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 vi) 외국의 대표적 저비용항공사인 영국의 이지젯(easyJet),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Ryanair), 미국의 사우스웨스트(Southwest), 프런티어(Frontier) 항공사 등도 항공기가 탑승교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리프트카 및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여 직원들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기내 착석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지

## 관련규정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42조(조정)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

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관련)

1.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기타		
		안내방송	문자안내판	행선지표시	휠체어승강설비	휠체어보관함	교통약자용좌석	장애인전용화장실	수직손잡이	장애인접근가능표시	출입구통로
버스	시내 버스 (저상형)	○	○	○	○		○		○	○	
	시내 버스 (일반형)	○	○	○	○		○		○	○	
	시내 버스 (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시외 버스	○	○	○	○		○			○	
철도차량		○	○	○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항공기		○	○	○		○	○	○		○	○
선박		○	○	○	○	○	○	○		○	○
광역전철		○	○	○			○		○	○	○

**4** 2012. 7. 18.자 11진정0317900 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요 약>****【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므로,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적합하게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제2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 제3조 및 별표2, 「도로교통법」 제2조·제6조·제8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 1. 진정 요지

○○구 ○○○○○길(이하 '피진정 도로'라 한다.)은 양방향 통행 차도이며 보도(이하 '피진정 보도'라 한다.)는 한 쪽에만 있는데 보도 폭이 비좁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방문 시 보도로 통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진정인은 2011. 4. 15. ○○구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0.8m인 보도 폭을 1.2m로 넓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설치된 보도이므로 편의증진대상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도 폭을 넓히려면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변경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1. 5. 31. 보도확장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왔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1) ○○구 ○○○동 00-00(복지관)에서 00-000 구간에 걸쳐 개설된 피진정 도로는 ○○공사(舊○○○공사)에서 1997. 12. 24.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02년 사업완료 시 개설하여 본 기관에 기부 채납한 도로로서 1997. 12. 24.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승인일 이후인 1998. 4. 11. 시행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2006. 1. 28.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피진정 도로는 ○○○○아파트(2,400세대) 후문 출입로 및 인접 일반주택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면도로로서, 보도 폭이 1.5m이나 보도 상 장애물(보안등)로 인하여 순 보행 폭이 약 60~70cm로 협소하여 보행자 및 휠체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변 거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절차를 거쳐 양방향 통행인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차도축소 및 보도 확장(보안등 이설)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본 기관은 주변 거주민들에게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2011. 5. 의견 수렴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일방통행로 지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불가피하게 단시일 내 보도확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피진정 도로변 보도정비(확장)는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정비가 가능한 ○○동 00-00호 복지관 앞 단절된 보도 연결 및 보안등 1개소에 대한 이설 공사를 2011. 6. 30. 완료하여 보행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는 ○○○○공사가 피진정 도로를 신설하여 도로관리청인 피진정기관에 기부 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1997. 12. 24. 승인한 바 있으며, 동 사업계획은 1997. 12. 31. ○○○○시 고시 제1997-○○○호에 게재되었다.

나. 피진정 보도는 전체 길이 약 240m로 보도의 유효폭은 1m이나 약 20m 간격으로 피진정 보도 위에 설치된 10개의 보안등으로 인해 보안등 밑기둥 부분의 보도 유효폭은 55cm에 불과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주위로는 통행할 수 없다. 또한, 피진정 보도의 일부구간은 바닥면의 상하 기울기가 12도에서 26도에 이르고, 좌우기울기도 10도에서 16도가 되는 등 보도의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여러 곳에 걸쳐 있고, 보도의 남쪽 시작부분에 약 15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을 위해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가 없는 보행자들의 경우에도 2명 이상 나란히 걷기에는 보도 폭이 협소하여 차도로 내려와 통행하고 있다.

다. 피진정 도로는 전체 길이 약 240m, 도로폭 6m(도로 가장자리 제외 시 폭 5m)의 양방향 통행이 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고 도로의 한 쪽에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피진정 보도의 맞은편에 항상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아 주행차량들의 교행이 어려우며,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 시 소형 주행차량의 경우 휠체어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휠체어를 추월해 통행하고 있으며, 대형 주행차량의 경우 차도의 폭이 좁아 휠체어를 추월하지 못하고 휠체어 뒤를 따라서 통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 피진정 도로의 입구(○○구 ○○○동 00-00)에 위치한 복지관은 2010. 12. 개관한 종합복지관으로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이 위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보치아 경기가 있을 때에는 약 100여명 정도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약 40~50명 정도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이 중 피진정 보도를 이용하려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보도의 폭 및 기울기, 턱 낮추기 등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되어있지 않아 피진정 보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해 복지관을 왕래하고 있다.

마. 피진정기관은 피진정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장애가 없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2011. 5. 피진정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140명의 주민 중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134명의 주민이 반대하였고, 6명이 찬성하였다.

바. 피진정기관은 ○○○○경찰서에 2011. 5. 17. 피진정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요청을 위한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경찰서는 피진정 도로에 ○○동 ○○아파트 진·출입로가 있어 이에 따른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피진정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2011. 6. 7. 피진정기관에 회신한 바 있다.

## 5. 판단

### 가.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라 한다.) 제3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에는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하여,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할 것을, 「이동편의증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도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 할 것이다.



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를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보도'란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피진정 도로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1997. 12. 24. 당시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로 1989. 12. 30. 전부개정, 시행일은 1989. 12. 30.) 제33조 제2항은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994. 12. 30. 보건복지부령 1호로 제정되고, 1995. 1. 1.부터 시행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에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진정 보도는 보도의 유효폭, 기울기, 턱낮추기 등에서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시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은 1m에 불과하며 약 20m 간격으로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유효폭은 55cm에 불과하므로 통상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최소 유효폭이 80cm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등이 설치된 피진정 보도의 부분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과할 수 없다는 점, 피진정 보도의 일부 바닥면이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매우 심하며, 보도의 남쪽 시작부분에 턱낮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피진

정 보도의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없으며,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로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감내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적합하게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 보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인은 피진정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장애가 없는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도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 피진정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대다수가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도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진정 보도의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진정 보도 위에 설치된 보안등 10개를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거나 보안등의 밑기둥이 없도록 제작된 최신 기술이 반영된 형태의 보안등으로 현재의 보안등을 변경 설치할 경우,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 유효폭이 55cm에서 1m로 확장되므로, 통상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최소 통과 유효폭이 80cm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안등만을 이전 및 변경하더라도 휠체어로 통행하기에 다소 불편은 따르지만 휠체어로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의 유효폭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 아울러 피진정 도로가 개설된 부분은 평지이므로 피진정 보도의 일부 구간 중 휠체어로 통행하기에 기울기가 심하며, 평탄하지 않은 바닥면을 평탄하게 재시공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 마찬가지로 피진정 보도 남쪽 시작부분의 약 15cm 높이의 턱을 낮추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 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도로 지정한 후 피진정 보도를 확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서도 피진정 보도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도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의 판례에서는 일방통행지정으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교통안전, 원활한 소통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시(2009구합5177)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근처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우선 시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증대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더 중요시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제시한 사유는 피진정 보도의 유효폭 및 기울기 등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을 위해 적합하게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동편의증진법」 적용 여부

피진정 도로 및 피진정 보도는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며, 동 계획이 ○○○○시로부터 1997. 12. 24. 승인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199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6. 1. 28.부터 시행된 「이동편의증진법」, 2008. 4. 11.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바, 위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관하여 위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마.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인이 피진정 보도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 보도 등 재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란주

별지

## 관련규정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3. 「장애인복지법」 (현행)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편의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4179호, 1989.12.30, 전부개정]

제33조(편의시설) ②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장애인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 ①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시설이나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 미끄럼없는 평탄한 보도,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로 마감한 단차없는 횡단보도

② 제1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6.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조 (세부설치기준 및 대상시설)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그 설치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별표 2]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제3조관련)

##### 1. 도로

##### 가. 일반사항

(1) 보도는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通行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로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형유도블록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과 기울기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유모차등과 서로 교행하기 위하여 1.8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경사진 보도가 길게 연장될 경우에는 30미터마다 설 수 있는 수평면 휴식참을 1.5미터 길이만큼 설치할 수 있다.

다. 보도의 경계

- (1) 보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경계석등과 같은 뚜렷한 표시가 없는 곳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보도와 차도의 교차지점에 시각장애인의 보도이탈방지과 안전을 위하여 점형유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라. 보도바닥재

- (1) 보도의 바닥표면은 장애인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고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벽돌등으로 보도를 덮을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4) 배수구등의 덮개는 휠체어의 바퀴나 지팡이 끝이 틈새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자구멍이나 틈새의 간격이 2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5) 가로수의 가지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지면에서 2.5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6) 가로수의 밑부분이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보도나 경사로에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하여 볼라드(bollard)를 설치할

경우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위하여 그 간격이 0.9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7. 「도로교통법」(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도로교통법」 [법률 제5296호, 1997.3.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2012. 7. 18.자 12진정0216600 결정 [임신 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혹 행위 등]

〈요약〉

**【결정사항】**

-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
- 【2】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의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요청
- 【3】 ○○도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 정원을 초과한 환자 수용 등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이 임신 중인 환자를 장기간 격리 및 강박하고, 약물 복용을 계속 강요하여 진정인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에 이르게 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증거인멸 방지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됨.
-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화사용 제한에 있어 사유나 내용,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를 불이행했으며, 피진정 병원은 기본적으로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증거인멸 방지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됨.
- 【3】 피진정인은 야간 응급환자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정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 병원 병동근무일지에 의하면 정원을 초과한 환자 수용이 일시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입원환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치료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계속된 과밀수용으로 입원환자가 폐쇄병동에서 생활하게 되는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 제45조 및 제46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의원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의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3. ○○시장에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가혹행위, 통신제한 행위, 정원을 초과한 환자 수용 등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2. 16. ○○의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당시 임신 5주차였는데, 피진정인에게 임신사실을 알리고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어 정신과 약물 복용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진정인은 입원 당일부터 진정인을 격리실에 27일간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으며 약물 복용을 강요하였다. 진정인은 장기간의 격리·강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진정인의 지시대로 약물을 결국 복용하였는데, 이후 기형아의 출산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인의 전화를 받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이 외부에 전화하는 것을 제한하였고, 진정인 외에 다른 환자들의 전화통화도 제한하였다.

다. 진정인 입원 당시, 피진정 병원은 환자가 60명 정도 있었는데, 정원보다 환자가 많다.

##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 가. 진정인

피진정인은 2010. 2. 16. 입원당일부터 27일간 진정인을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으며 침대에 묶인 채 기저귀에 대소변을 해결해야 했다. 입원 후 17일째 되던 날, 머리에 이가 생긴 것 같아 피진정인에게 사정해서 샤워하러 격리실을 한번 나온 것 이외에는 격리실에 계속 묶여 있었고, 15일 동안 굶으면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진정인은 허락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계속된 강박으로 허리통증이 심해 강박된 상황에서 진통제를 맞았고 피진정인의 지시대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 약물 복용 후 곧바로 격리·강박이 해제되었으나, 임신 중에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기형아 출산이 염려되어 2010. 3. 23. 광명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임신중절 수술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통화 제한을 하여,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진정인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 나. 피진정인

#### 1)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진정인을 성심성의껏 치료해 왔다. 2010. 2. 16. 진정인이 입원당시 진정인의 어머니와 언니가 동행하였다. 본인이 처방하는 약은 기형아 출산 우려 등이 없는 약이었으나 진정인은 입원 첫날부터 약물복용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진정인에 대해 강박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단, 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하루를 초과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 격리·강박을 실시하였다. 진정인이 임신한 사실은 입원당시 검사를 통하여 2010. 2. 18. 알게 되었다. 진정인으로부터 피진정인 덕분에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감사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 2)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이 보호자를 협박해서 일시적으로 전화통화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

#### 3)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야간에 응급환자가 입원하여 일시적으로 환자정원(49명)을 초과한 적이 있다.

## 다. 참고인

## 1) 피진정 병원 소속직원 A

##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진정인은 20일에서 23일 정도 격리·강박을 당하였고, 한두 차례 외에는 격리실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였다. 그리고 진정인은 강박기간동안 기저귀가 채워져 있었다. 진정인 외 다른 환자도 하루를 초과하여 강박한 경우가 많으며, 이00 환자의 경우에는 10일 이상 강박당하기도 하였다.

##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진정인은 입원기간 중 전화통화를 제한 당했으며, 원장이 다른 환자에게도 임의적으로 전화통화를 제한하였다.

## 다)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본인이 피진정 병원에 입사한 직후에는 환자가 20명 정도였으나 점차 환자가 많아졌으며, 정원 49명을 초과하여 입원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2) 동료환자

##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진정인이 20일 정도 오랫동안 강박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강박 당하는 기간 동안 격리실 밖으로 나온 것을 본적이 없다. (동료환자 B, C, D, E)

격리실 앞을 지나가다가 진정인이 묶인 상태에서 병원직원이 진정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며(동료환자 B), 본인도 3일 동안 강박 당하였고 강박기간동안 기저귀를 차고 대·소변을 보았다.(동료환자 E)

본인은 진정인이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갈아주고 입덧할 때 토하는 것까지 모두 손으로 봉투에 담아 처리했다. 2009년도에 피진정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 진정 외 이00 할아버지를 보호사가 환자를 시켜 소, 돼지 묶듯 사지를 묶어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이외도 밥을 안 먹는다, 간호사한테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환자를 수시로 가두었다.(동료환자 I)

##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입원한 이후 본인은 전화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원장이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동료환자 F, G, H)

## 다)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피진정 병원에 환자가 60명이 입원한 적이 있었다.(동료환자 B, C)

3) ○○산부인과 의사 J

진정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중인 환자로 2010. 3. 23. 본원에 내원하여 임신초기로 확인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어머니와 함께 왔는데, 정신병원에서 정신과 약물을 상당기간 복용한 사실과 이후에도 정신과 약물의 투약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중절 수술을 강력히 원해 수술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이 있으며, 더욱이 정신병원에서 제공하는 약물은 다른 약물보다 태아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정인이 복용한 약물은 임신부 및 수유 위험이 있으며, 사람에 대한 입증 실험은 충분치 않으나 동물실험에서는 태아 기형과 관련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5) 한림대학교 ○○○ 교수

진정인이 복용한 약물은 임신부 투여에 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1) 진정인은 2010. 2. 16. 보호의무자 어머니와 언니의 입원동의와 ‘사고장애 및 행동장애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피진정 병원에 입원되었고, 같은 해 12. 11. 퇴원하였다.

2) 피진정 병원 보호사의 병동근무일지에는 ‘2010. 2. 16. 12:00 ○○○ 입원, 격리실 입실’, ‘2010. 2. 23. ○○○ 강박 계속 유지할 것, 풀어주지 마세요(원장지시)’,

‘2010. 3. 8. ○○○ 강박 해제, 503호 입실예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 피진정 병원의 격리·강박일지에는 개설신고일(2008. 2. 27.)부터 진정한이 입원하기 전(2010. 2. 15.)까지 격리·강박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의 입원일(2010. 2. 16.)부터 수술일(2010. 3. 23.)까지의 기간 중 진정한에 대한 5차례 격리·강박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일시	내용	일시	내용
2010. 2. 16.	1시간 격리	2010. 3. 7.	1시간 강박
2010. 2. 23.	2시간 강박	2010. 3. 8.	3시간 강박
2010. 3. 1.	2시간 격리	-	-

4) 피진정 병원의 간호기록지에는 ‘2010. 2. 16. 입원이후 진정한은 약물 복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0. 3. 7. 진통제(카페나) 주사, 2010. 3. 8. 약물(rsp, cog) 복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의사지시서(doctor’s order)에는 피진정인이 2010. 3. 8. 진정한에게 위 약물 투약을 지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진정한은 피진정 병원 입원중인 2010. 3. 23. ○○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1) 피진정 병원의 병동근무일지에는 ‘2010. 3. 19. ○○○ 21일에 전화 1통만 시켜주세요’, ‘2010. 8. 12. ○○○ 전화 2주 1회’, ‘2010. 8. 19. ○○○ 전화 1회 order’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진정한의 전화통화 제한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구체적 사유나 지시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1) 피진정 병원은 2008. 2. 27. 개설신고를 한 정신과의원으로 입원환자의 정원은 49명이다.

2) 2011. 1. 1. ~ 2011. 8. 31. 기간 중 피진정 병원의 병동근무일지에는 대부분 50명 이상의 환자가 입원하였으며, 입원환자가 60명 이상이었던 날이 2월 3차례, 6월 2차례, 7월 4차례, 8월 6차례 등 15일에 이른다.

##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 격리·강박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이 위협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그리고 격리·강박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

먼저,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공격성을 보였을 때 하루를 초과하지 않고 몇 시간 정도만 격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i) 피진정 병원 소속 보호사가 환자 입·퇴원 사항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는 병동근무일지에는 2010. 2. 16.부터 2010. 3. 8.까지 21일 동안 진정인이 격리·강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풀어주지 마라’는 피진정인의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ii) 피진정 병원 직원과 당시 동료 환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는 점, iii) 특히, 동료환자인 참고인 I는 진정인이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입덧할 때 토하는 것까지 처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iv) 진정인이 약물 복용을 거부하자 격리·강박하고, 약물을 복용하자 격리·강박을 해제한 것으로 병동근무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진정인은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하여 장기간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진정인의 임신중절 수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진정인은 임신 중이어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기 원하지 않았으나, 피진정인의 계속된 격리 및 강박 조치로 인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또한 격리 및 강박 조치는 건강한 성인도 감내하기 어려우며, 「정신보건법」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엄격하

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신 중인 환자에게 장기간의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한 행위는 환자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하여 장기간의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하고, 약물 복용을 계속적으로 강요하여 진정인은 임신중절 수술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 및 제46조 제1항 위반으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증거인멸 방지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나. 진정요지 나.항의 전화통화 제한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정신보건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한 사유와 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개시·종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전화사용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 사유나 내용, 제한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 행동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볼 때 피진정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입원환자의 전화사용을 제한하고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증거인멸 방지 및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 진정요지 다.항의 환자의 초과수용에 대하여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피진정인은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정원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 병원의 병동근무일지에 의하면 2011. 1. 1 ~ 2011. 8. 31. 8개월 동안 60명 이상을 초과한 사례가 15회에 이르고, 참고인들 또한 피진정 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환자를 수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원을 초과한 환자 수용이 일시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듯 허용된 인원을 초과한 환자의 수용은 입원환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유무형의 다양한 치료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특히 계속된 과밀수용은 입원환자가 폐쇄병동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적 차원에서 심히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8.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관주

별지

## 관련규정

###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43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 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 제한) ①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들이 위협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제1항에 따라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자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행동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 3.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2.~4. 생략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생략

### 4.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원실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
- 2.~9. 생략

5.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7조 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정 신 병 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 신 과 의 원
가. 입 원 실	환자 50인 이상이 입원 할 수 있는 병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인 이하가 입 원할 수 있는 병실

제11조의3(기록의 작성·보존)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에 한정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입원 당시 대면진단

- 가. 진단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동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다.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입원의 필요성
- 라. 대면진단일시

2. 계속입원 심사 청구 및 결과

- 가. 청구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나. 동의한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다. 최초 입원 등의 연월일
- 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
- 마. 판정 결과

3. 투약 등 치료내용

- 가. 투약 지시자 및 수행자
- 나. 투약 내용
- 다. 투약일시

4. 치료프로그램의 내용과 결과, 지시자와 수행자 및 실시일시

5. 격리·강박을 하는 사유와 내용, 격리·강박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격리·강박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6.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통신·면회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 및 개시·종료시간
-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10년
  2.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기록: 5년
-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록을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등"이라 한다)에 보존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필름등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등을 제작한 사람이 필름등의 표지에 본인의 성명과 제작일시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하여야 한다.

**6** 2012. 7. 25.자 12진정0196400 결정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요 약>****【결정사항】**

- 【1】** 피진정인에게, 입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2】**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요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규정에 의거하여 진정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조모가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해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진정인의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 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정신보건법」 제2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입원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시 ○○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의 보호의무자 요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 1. 진정요지

가. 2011. 7. 14. 진정인은 ○○시 ○○구 소재 ○○○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되었는데, 입원 당시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할머니 ○○○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과 평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남매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나. 피진정 병원 입원 전에 진정인의 부친이 진정인을 고소하였는데 피진정 병원 에서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부당하다.

##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에 대하여

입원당시 진정인의 친부와 친누나가 같이 내원하여 입원동의를 하였다. 진정인은 평소 증상으로 인해 가출 후 주거가 불분명하였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없는 상태였으나, 친누나가 병원비 수납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입원할 정신병원을 정할 때도 직접 길병원을 선택하여 환자를 설득하여 데려오는 등 보호자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였기에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본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입원하게 됨을 진정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진정인도 입원에 반대하지 않았다.

본원에서는 입원당시 진정인 조모가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친부와 친누나가 보호의무자 자격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보호의무자의 증빙자료는 병원측 의무사항은 아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의 부친의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하여

진정인이 부친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부친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본원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없었다.

###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사실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입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기록부와 피진전병원 소속 ○○○(원무과 담당직원), ○○○(행정과 담당직원) 통화진술, 진정인 제출 2011. 8. 9. ○○지방검찰청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11. 7. 14. 부터 같은 달 30.까지 16일간 부친 ○○○과 누나 ○○○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되었으며, 입원약정서상 담당주치의 의견은 '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이 제출한 2011. 7. 15. ○○구청장이 발행한 ○○○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이 입원될 당시에 진정인의 직계혈족으로 부친 ○○○ 외에 진정인의 조모 ○○○이 생존해 있었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2012. 5. 8. ○○구청장 발행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조모는 2011. 12. 30. 사망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누나 ○○○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를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마. 진정인이 제출한 2011. 8. 9. ○○지방검찰청○지청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2011형제19101호와 의견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부친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진정인이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점과 피해자인 진정인의 부친 ○○○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 5. 판단

### 가. 진정요지 가.항의 부당입원 여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경우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에 의해 환자가 부당하게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라고 하여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한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병원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위 규정에 의거하여 진정인과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조모 ○○○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가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나 인정사실에서 보듯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진정인의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 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진정요지 나.항의 부친의 보호의무자 적격 여부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건의 경우와 같이 형사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의 검사의 수사행위가 「정신

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통상 소송이라 하면 법원의 심판 절차이므로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의 수사행위까지 소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인의 부친이 진정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따른 소송 당사자가 아닌 바, 피진정 병원에서 진정인의 부친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관주

별지

## 관련규정

###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2. 「정신보건법」

제2조(기본이념)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신청 등) ① 보호의무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

려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입원동의서에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입원권고 의견(정신과전문의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주민등록표등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다. 건강보험증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1부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행한다. 다만, 보호의무자 2명의 동기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보호의무자 중 1명이 동意的 의사표시는 하였으나 고령, 질병, 군복무, 수형, 해외거주 등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를 입원 시까지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보호의무자로부터 그 사유서(동意的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의 기재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입원을 시킬 수 있되, 해당 보호의무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입원동의서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신질환자가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7 2012. 8. 22.자 11진정0188500 결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 제공]

### 〈요 약〉

####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결정요지】

시티투어버스는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재화 및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 【참조조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장

#### 【주 문】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광역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 2007년부터 ○○시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 코스 시티투어버스는 휠체

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탑승할 수 없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티투어버스를 비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 나. 피진정인

1) ○○ 시티투어버스는 ○○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순회·관광할 수 있는 윈스톱 관광서비스 제공 및 도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0. 12. 2.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2개의 순환코스(○○산, 도심)와 6개의 정기(모집)코스를 운행하며 2층 버스 2대를 포함하여 총 6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2) 도심순환코스의 경우 2010. 4.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대의 2층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산 코스의 경우 2대의 일반버스가 운행 중이나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시티투어 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산 순환코스는 사단법인 ○○광역시관광협회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코스는 오르막 및 커브길이 많아 차량 흔들림으로 전동휠체어 적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리프트를 설치한 2층 버스는 산간도로인 ○○산 순환 도로의 폭이 좁아 커브 길 주행이나 가로수 나뭇가지의 늘어짐으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운수업체 문의 결과, 저상차량은 일반차량에 비해 엔진성능이 약해 탑승객이 많거나 경사도가 심한 노선에는 투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민간운수사업자에게 신규로 구입하여 줄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고 현재 본 기관의 재정상태로는 차량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시티투어버스 교체 등이 있을 시 버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겠다.

###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인정 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기관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시티투어버스 사업의 주체로, 동 사업은 ○○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순회·관광할 수 있는 원스톱 관광서비스 제공 및 도시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이 운행노선, 운행대수 등을 정하여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이를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은 2012. 8. 현재, ○○산 코스와 도심 코스 2개의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도심 코스는 2010. 4.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2층 버스를 개조하여 하루 4회 운행하고 있으며, ○○산 코스는 2007년부터 ○○시관광협회에 위탁 운행하고 피진정기관이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다. ○○산 순환코스는 1일 6회, 45인승 1대와 25인승 1대 등 총 2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혼자 힘으로 버스에 탑승 할 수 없다.

### 5.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

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차별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기관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 나.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

피진정기관이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에 탑승할 수 없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i) 시티투어버스는 일반 대중이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서는 아니 된다는 점, ii) 수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버스 기사 및 가이드가 탑승할 있도록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조력자가 등에 업고 탑승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점, iii)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하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 등의 장애인을 잘 못 업었을 경우 신체에 착용한 의료기구가 탈착되거나 마비된 팔 또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을 수 있으며, 또한 비좁은 버스 계단을 통해 장애인을 업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실족하여 굴러 떨어질 경우 조력자 및 장애인 모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iv) 설령, 인적서비스를 통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위 버스를 탑승한다 하더라도 버스 내 안전장치의 부재로 운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은 재화 및 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 다. 정당한 사유의 존부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 ○○산 코스를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착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가 일반차량에 비해 엔진성능이 약해 탑승객이 많거나 경사도가 심한 ○○산 노선에 투입하기 어렵다면,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일반버스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일반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통상 소요비용이 2~3천만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역자치단체인 피진정기관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피진정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방지할 적극적 조치 의무를 지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 셋째, 피진정기관이 시티투어버스 위탁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참가조건을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장착된 관광버스를 소유한 사업자로 한정 공고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이 자체예산 투입을 하지 않더라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 넷째,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장착된 버스를 임차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 등이 구비된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 피진정기관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 라. 소결

종합하여 보건대, 피진정기관이 위탁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8. 2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명숙    위원 한태식    위원 곽관주

별지

### 관련규정

#### 1. 「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권도서관 신착자료목록**

**1 국내도서**

구분	서명	저/편자명	발행처	발행년도
사회과학 일반	▪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피터 코닝	에코리브르	2011
	▪ 노동의 배신 : '공정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워킹 푸어 생존기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2012
	▪ 불량 사회와 그 적들: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장하준 외	알렙	2011
	▪ 사당동 더하기 25 :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조은	또하나의 문화	2012
	▪ 성이론 :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	고정갑희	여이연	2011
	▪ 여성, 한국사회를 묻다	경상대학교 여성연구소	경상대학교출판부	2012
	▪ 전쟁, 총, 투표	폴 콜리어	북이십일 21세기북스	2011
	▪ 피로사회	한병철	문학과 지성사	2012
	▪ 회색 쇼크 : 고령화, 쇼크인가 축복인가	테드 C. 피시먼	반비	2011
사회과학 정치학	▪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하승수	두리미디어	2012
	▪ 감시사회 : 별거벗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한홍구 외	철수와영희	2012
	▪ 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전략	윌터클레멘스 주니어	한울	2010
	▪ 분노하라	스테판 에셀	돌베개	2011
	▪ 새로운 100년 : 가슴 뛰게 하는 통일이야기	법륜,오연호	오마이북	2012

구분	서 명	저/편자명	발행처	발행 년도
사회 과학 정치학	▪ 세계인권선언	이부록 그림 조효제 옮김	프롬나드	2012
	▪ 이상호 기자 X파일 : 진실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상호	동아시아	2012
	▪ 표현, 언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	이재진, 이정기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1
사회 과학 경제학	▪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노암 촘스키 외	위너스북	2012
	▪ 문제는 경제다	선대인	웅진씽크빅	2012
	▪ 유령, 세상을 향해 주먹을 뻗다 : 천만 비정규직 시대의 희망선언	홍명교	아고라	2011
	▪ 이주, 그 먼 길 : 우리 사회 아시아인의 이주 노동 귀환을 적다	이세기	후마니타스	2012
	▪ 프레카리아트, 21세기 불안정한 청춘의 노동	아마미야 가린	미지북스	2011
사회 과학 법학	▪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하명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2
	▪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권	이준일	弘文社	2012
	▪ 정보시대의 인간안보 : 감시사회인가? 복지사회인가?	조화순	집문당	2012
	▪ 진실 유포죄	박경신	다산북스	2012
사회 과학 사회 복지 · 사회 문제	▪ 10대가 아프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위즈덤 하우스	2012
	▪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장 지글러	갈라파고스	2012
	▪ 르몽드 환경 아틀라스 : 지도로 보는 환경문제의 모든 것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겨레	2011

구분	서 명	저/편자명	발행처	발행 년도
사회 과학 · 사회 복지 · 사회 문제	▪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 모두 건강한 99퍼센트의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조경애 [외]	이매진	2012
	▪ 벼랑에 선 사람들 : 서럽고 눈물 나는 우리 시대 가장 작은 사람들의 삶의 기록	제정임 단비뉴스 취재팀	오월의봄	2012
	▪ 성폭력 뒤집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권김현영 [외]	이매진	2011
	▪ 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새잎	2011
	▪ Because I am a girl : 가난한 나라에서 여자아이로 산다는 것	플랜 재팬	에이지이십일	2011
사회 과학 교육학	▪ 다문화사회에서의 반편견 교수 전략 : 편견, 고정관념, 차별	추병완	하우	2012
	▪ 푸른 눈, 갈색 눈 : 세상을 놀라게 한 차별 수업 이야기	윌리엄 피터스	한겨레	2012
	▪ 학교폭력 멈춰!	문재현 외 지음	살림터	2012
문학	▪ 고향마을 살구꽃은 피는데 : 떠나 온 사람들의 이야기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2009
	▪ 나는 게이라서 행복하다 :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와 성 소수자 인권운동	김조광수 김도혜	알마	2012
	▪ 나는 미혼모다	물푸레복지재단	연두	2011
	▪ 삼성을 살다	이은의	사회평론	2011
	▪ 의자놀이 : 공지영의 첫 르포르타주 쌍용자동차 이야기	공지영	휴머니스트	2012

**2** 국외 도서

구분	서 명	저/편자명	발행처	발행 년도
종교	▪ Tensions with in and between Religions and Human Rights	Van der Ven, Johannes A	BRILL	2012
	▪ Religion and human rights : an introduction	Green, M. Christia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사회 과학  일반	▪ Best Practices for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NGO Fact-Finding	Steinberg, Gerald M	BRILL	2012
	▪ The Well-being, peer cultures and rights of children	Bass, Loretta Elizabeth	Emerald Group Pub	2011
	▪ Human rights and media	Papademas, Diana	Emerald	2011
	▪ Transnational migration, gender and rights	Leonard, Liam	Emerald	2012
사회 과학  정치학	▪ Human Rights as Politics and Idolatry	Ignatieff, Micha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 Global Society and Human Rights	Cotesta, Vittorio	BRILL	2012
	▪ Privacy and information rights	Healey, Justin	Spinney Press	2012
	▪ Human rights and social policy : a comparative analysis of values and citizenship in OECD countries	Nevile, Ann	Edward Elgar	2010
사회 과학  법학	▪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2011
	▪ The right to health in international law	Tobin, John	Oxford University Press	2012